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2015. 3

최창희 · 정인영

머 리 말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확률과 규모가 클수록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가 클수록 보험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므로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고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 약 / 1

I. 개요 / 13

1. 개관 / 13
2.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 / 15
3. 선행연구 / 26

II.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제도 현황 / 30

1. 시장 현황 / 30
2. 제도 현황 / 36
3. 민사소송 현황 / 42

III.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진단 및 평가 / 49

1. 국내외 시장 비교 / 49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 비교 / 55
3.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제도 비교 / 66

IV.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 88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 88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 91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 96
4. 결어 / 101

| 참고문헌 | / 104

| 부록 | / 107

■ 표 차례

- 〈표 I -1〉 2011년 국가별 세계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 / 18
- 〈표 I -2〉 2008년 국가별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 점유율 / 19
- 〈표 I -3〉 종목별 손해배상 소송 건수 / 21
- 〈표 II -1〉 국내 책임보험 보험료와 보험금 / 31
- 〈표 II -2〉 국내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 31
- 〈표 II -3〉 국내 손해보험 종목별 비율 / 32
- 〈표 II -4〉 국내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 33
- 〈표 II -5〉 민사소송 건수(제1심 기준) / 44
- 〈표 II -6〉 연도별 손해배상 소송 접수 건수 / 45
- 〈표 II -7〉 2008~2012년도 손해배상 소송 처리 결과 / 46
- 〈표 II -8〉 민사소송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 / 47
- 〈표 III -1〉 주요국의 인당 GDP, 배상책임보험 밀도 · 침투도 / 49
- 〈표 III -2〉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 51
- 〈표 III -3〉 영국 기준으로 합산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 51
- 〈표 III -4〉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 53
- 〈표 III -5〉 미국 기준으로 합산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 54
- 〈표 III -6〉 제1심 사건 소송가액별 건수 / 56
- 〈표 III -7〉 최근 10년간 한국 민사 소송 통계 분석 / 57
- 〈표 III -8〉 한국의 인당 GDP와 인구 추이 / 58
- 〈표 III -9〉 인당 손해배상 통계, 보험 수요, 위험회피계수의 추정값 / 58
- 〈표 III -10〉 미국 2005년 민사 소송 판결 통계 / 60
- 〈표 III -11〉 2005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의 통계적 비교 / 62
- 〈표 III -12〉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사례 / 79
- 〈표 III -13〉 일본 상해 사고 중상 위자료 / 83
- 〈표 III -14〉 일본 상해 사고 경상 위자료 / 83
- 〈표 III -15〉 일본의 장애 등급별 위자료 / 84

■ 표 차례

- 〈표 Ⅲ-16〉 일본의 피해자 사망 위자료 / 84
- 〈표 Ⅲ-17〉 주요국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비교 / 86
- 〈표 Ⅲ-18〉 한국·미국·일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산정 방법 비교 / 87
- 〈표 Ⅳ-1〉 일본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액 판례 / 89
- 〈표 Ⅳ-2〉 일본 자전거 사고 사례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 / 89
- 〈표 Ⅳ-3〉 2008년 이후 일본 자전거 사고 건수 / 90
- 〈표 Ⅳ-4〉 한국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 / 91
- 〈표 Ⅳ-5〉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 비교 / 92
- 〈표 Ⅳ-6〉 일용노임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임금 비교 / 93
- 〈표 Ⅳ-7〉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 94
- 〈표 Ⅳ-8〉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에 따른 손해배상액 변화 예 / 97
- 〈표 Ⅳ-9〉 2013년 연령별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 / 98
- 〈표 Ⅳ-10〉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 99
- 〈표 Ⅳ-11〉 노동능력 상실률 변화에 따른 시장 규모 변화 / 101

■ 그림 차례

- 〈그림 I -1〉 배상책임보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 13
- 〈그림 I -2〉 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세 / 16
- 〈그림 I -3〉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배상책임보험의 비율 / 17
- 〈그림 I -4〉 국내 제1심 손해배상 소송 건수 변화 추세 / 21
- 〈그림 I -5〉 국내 기타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 22
- 〈그림 II -1〉 주요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실적 / 35
- 〈그림 II -2〉 삼분설에 따른 손해의 구분 / 38
- 〈그림 II -3〉 민사소송 제1심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 / 43
- 〈그림 III -1〉 손해배상책임 증가에 따른 보험수요()와 시장 규모 변화 / 64
- 〈그림 III -2〉 손해의 구분 / 65
- 〈그림 III -3〉 일반배상책임보험 담보별 지급보험금 / 66

A Factor that Hinders the Growth of the Korean Liability Insurance Market: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Regarding Personal Injury

Recent occurrences of large-scale safety accidents induced heated debates regarding legal renova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law and indifference toward safety accidents. Yet, it is regrettable that legal liabilities regarding safety accident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Economic entities are motivated to manage their risk when their risk has a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the magnitude of its expected losses are great. Foreign countries let economic entities exert their efforts on preventing safety accidents by enforcing strong legal liabilities. However, as this research points out, Korea has relatively low standards on legal liabilities on personal injury. Such low standards are not only ineffective on forcing economic entities to make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but they also prevent us from providing sufficient compensations to victims.

From the insurance perspective, an economic entity is more willing to manage her risk via an insurance policy when her risk has a probability of a huge loss. Therefore, low standards on personal injury liability can severely limit the growth of liability insurance market.

This research compares Korean legal liabilities on personal injury to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points out irrational parts. Furthermore, this research also estimates the impact of strengthening legal liabilities pertaining to personal injury on liability insurance market. These efforts of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by strengthening legal liabilities regarding personal injury and to the promotion of Korean liability insurance market.

요 약

I. 개요

1. 개관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보험사고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지도록 보험회사와 맺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됨.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임.
- 배상책임보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나 아직까지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보험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는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에 기여할 것임.

2.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¹⁾ 시장의 성장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전체 시장 대비 3%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 한국의 손해보험은 세계에서 10위 수준(2011년 기준)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세계 시장에서 10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42% 수준임(2008년 기준).
- 특정 보험 시장의 규모는 보험료 수준과 수요에 의하여 결정됨.
 - 본고는 Markowitz(1952) 평균-분산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수요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함.
 -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동기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의 기대값과 불확실성이 클수록 커짐.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평균과 기대값이 클수록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본고는 한국의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피해자 구제와 사고 방지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1) 손해보험 시장 전체에서 장기보험, 퇴직보험, 연금 등을 제외한 보험들을 순수보장성손해보험이라 부름.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의 통계를 장기보험, 퇴직보험, 연금 등을 다루고 있지 않은 외국의 손해보험 실적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전체 손해보험 통계에서 장기보험, 퇴직보험, 연금 등의 통계를 제외하였음.

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

3. 선행연구

- 지금까지의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본고는 지금까지 배상책임보험 특정 종목이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일면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음.

Ⅱ.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제도 현황

1. 시장 현황

-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5.3%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성장률(79.9%)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2. 제도 현황

-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에는 차액설과 평가설이 있으며, 한국은 이 중 평가설을 차용하였음.
- 한국은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누는 삼분법을 차용하고 있음.

-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임.
- 소극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로서 일실회익과 휴업손해 등이 이에 속함(일실회익의 산정 방법은 본문 참고).
- 진단서 발급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은 기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국내 민사 소송의 건수와 가액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송 건수는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소송가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의 69조 원에서 최근 2년간 8조 원 가량 감소하였음.
- 자동차사고와 산업재해 소송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 과오, 지적소유권, 기타(일반)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소송(63%)의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이고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낮음.

Ⅲ.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진단 및 평가

1. 국내외 시장 비교

-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음.
 - 특정 국가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활성화 정도는 경제 수준 이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 본고는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 이익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국과 영국·미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종목별로 보았을 때 한국과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타(일반)배상책임보험 등이고 미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기타(일반) 배상책임보험 등임.
 - 일반배상책임보험이 국가별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미국과 각각 1.48%, 7.06%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 비교

- 한국과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수치적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평균 민사소송 비용과 소송비용의 표준편차(변동성)는 각각 한국의 5배와 1.5배 이상임.
 - 전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17%이고 미국이 17.5%임.

- 1인당 연간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한국이 0.0027이고 미국이 0.0044로 미국의 발생 건수가 한국의 1.6배 수준임.
-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1인당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로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 표준편차가 각각 한국의 27배와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과 미국의 소송 통계를 토대로 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경제주체들은 비슷한 수준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손해배상책임 기대값과 변동성이 미국에 비해 작아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변수와 위험회피계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책임(L)이 1배에서 3배로 증가하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 전가 수준은 2012년 수치를 기준으로 52%에서 84%로 32%p 정도 증가하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4.8배 성장함.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의 손해는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고 대인손해는 삼분설에 따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의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①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항목은 실손보상 형태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음.
- 그러나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나라별로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50% 정도로 추정됨.

3.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관련 제도 비교

〈요약 표 1〉 주요국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손해의 정의	명목적 손해, 보상 손해, 징벌적 손해로 구분	비재산적 손해, 재판 이전 재산적 손해, 재판 후 재산적 손해로 구분	차액설 인정, 손해의 목표를 원상회복으로 정함, 손해를 특별손해와 통상손해로 나누지 않음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
특징	배심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여.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 제도 발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배심원은 피고의 유죄·무죄 여부의 결정에만 참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 또는 전환된 부분이 다수 존재	무과실책임주의 광범위하게 인정.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에게로 전가된 부분이 다수 존재	한국에서도 특정 부분에서 특별법으로 무과실책임 인정
배심원제	대부분의 주에서 배심원에 의한 배상액 인정. 일부 주는 판사가 조정 또는 판사가 배상액 결정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판결의 핵심이었으나 배심원 참여 없이 진행되는 형사 재판제도가 최근 도입되었음	배심원제도 없음 (1924년 폐지)	배심원제도 없음	배심원제도 없음
징벌적 손해	민사에 광범위하게 적용	민사에 광범위하게 적용	원상회복주의, 징벌적 손해를 기본적으로 불인정함. 위자료서 징벌적 요소 도입	제재적 위자료의 판결 존재	일부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판례 없음
위자료	위자료가 실제 손해액을 넘는 경우 자주 발생. 다양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한국과 달리 사고로 하지 못하게 된 활동이나 가족의 부양 의무 감소 등 다양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로 인정함	위자료는 손해를 직접 입은 개인에게만 인정함	한국과 유사한 위자료 산정 방법을 활용하나 위자료 수준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음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산정
일실회수액	피해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집단의 평균 이익을 일실회수액으로 인정	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수입이나 국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주부의 경우 대체고용 비용을 일실회수액으로 인정	재활과 재교육 비용 손해로 인정. 교육·소득활동 지연 비용 인정. 평균임금을 일실회수액 소득 기준으로 인정. 개인차 인정	기존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임금노동자의 평균 소득 인정	기존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이용

〈요약 표 2〉 한국·미국·일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산정 방법

	미국	일본	한국
임금노동자 개인사업자	사고 전의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개연성이 높은 임금인상 인정		
	물가상승률 인정	물가상승률 불인정	
주부	대체인력비용 분석법, 기회비용 분석법, 기능적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부에 대한 일실이익 충분히 인정	인구 센서스에 따른 여성의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아동	피해자와 유사한 집단의 평균 임금 인정, 개인차를 고려한 소득 기준 상향 적용 가능	인구 센서스에 따른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무직자	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금 기준 설정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가동연령	65세를 종료 시점으로 봄, 건강, 교육수준, 직업 등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상향 조정 가능	18세~67세를 가동연령을 봄	남자 22~60세, 여자 20~60세로 차등 적용
공제이자	실제 시장 이자율을 고려한 복리 이용 가능. 주에 따라 0% 이율 적용. 인플레이션 및 임금인상 추세 적용 가능	5% 복리 적용. 시장 이율 적용 사례 있음	법정이율 5%를 할인율로 이용, 경우에 따라 복리·단리 허용
생활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불법행위 사망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에게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50% 공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35% 공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의 1/3을 생활비로 공제
위자료	재산적 손해를 넘어서는 위자료 인정, 주별로 20~50만 달러로 비 재산 손해의 상한을 정한 경우도 있음, 다양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유족의 가족에게 거액의 위자료 제공	병원 통원 및 입원 기간,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 위자료 가족 위자료 등을 따로 지급, 한국에 비하여 위자료 수준이 높음	8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지급

■ 〈요약 표 1〉과 〈요약 표 2〉는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보여줌.

- 〈요약 표 1〉과 〈요약 표 2〉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요약 표 2〉는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거나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배상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IV.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 일본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자전거 사고 발생을 억제하였음.
 - 최근 일본은 자전거 대인사고에 대해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였음.
 - 일본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5% 감소하였음.
 -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2차적으로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급증시켰음.
- 일본이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준이 있음.
 - 예를 들어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명령된 고베법원 2013.7.4 판례는 피해자에게 개호비(39,400만 원), 일실이익(21,900만 원), 위자료(22,000만 원)에 소정의 치료비를 더한 것임.
 - 위 사고에 한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일실이익은 0(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일실이익 불인정), 위자료 8천만 원(상한이 8천만 원)이 되므로 한국은 동일한 사

고에 대해서 일본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손해배상을 받게 됨.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 본고는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① 일용노임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④ 가동연령에서의 남녀 차별,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⑥ 아동 피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 및 추가 교육비용을 손해로 불인정
- 이러한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든 1966년에 정해진 기준임.
- 따라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① 비경제활동 소득기준 일용노임 ⇒ 경제활동인구 평균 임금, ② 5%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 장기국채 이율 3%로 하향 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 가동연령 18~65세,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 위자료 수준 상향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 일실이익 산정기준 이외에 ②~⑥은 비합리적인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7세 남녀의 사망사고에서 다음 기준을 적용하면 남녀 각각의 손해배상액 증가액은 다음과 같음.
 - － 소득기준 일용노임 ⇒ 경제활동인구 평균 임금: 남(+12,300만 원), 여(+9,700만 원)

- 5% 공제 할인율 $\Rightarrow$ 3%: 남(+7,500만 원), 여(+5,100만 원)
- 가동연령 18~65세: 남(+8,200만 원), 여(+3,600만 원)
- 위자료 2배 증가: 남(+4,000만 원), 여(+4,000만 원)

■ 본고는 배상책임보험 대인사고 피해자의 연령과 부상 정도가 교통사고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를 가정하여 본고가 제시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가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 표 3>과 같이 추정하였음.

○ <요약 표 3>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는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침.

- 비경제활동 인구 소득기준 상향: 배상책임보험 수요 3% 증가
- 공제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배상책임보험 수요 10% 증가
- 가동연령을 18세에서 65세로 확대: 배상책임보험 수요 17% 증가
- 위자료를 2배 상향조정: 배상책임보험 수요 17% 증가
- 위의 모든 기준 적용: 배상책임보험 수요 55% 증가

<요약 표 3>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단위: 억 원)

적용기준		성별/사고유형				구분		
		남자		여자				
		사망	중상	사망	중상	합계	α	시장변화
기존	배상액	8,128	1,265	1,766	283	11,442	1	0%
	기존대비	100%	100%	100%	100%	100%		
평균임금 기준	배상액	8,416	1,308	1,792	287	11,803	1.02	+3%
	기존대비	104%	103%	101%	101%	103%		
3% 공제 이율	배상액	9,049	1,403	1,924	307	12,683	1.05	+10%
	기존대비	111%	111%	109%	108%	111%		
가동연령 18~65세	배상액	9,631	1,490	2,046	325	13,492	1.09	+17%
	기존대비	118%	118%	116%	115%	118%		
위자료 2배	배상액	9,588	1,557	2,341	398	13,884	1.11	+20%
	기존대비	118%	123%	133%	141%	121%		
모든기준 강화	배상액	12,735	2,029	2,873	478	18,115	1.29	+55%
	기존대비	157%	160%	163%	169%	158%		

주: 자세한 내용은 IV장 참조.

4. 결어

- 대부분의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는 한국의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여 진단한 결과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됨.
 - 본고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본고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이로 인한 대인사고 손해배상관련 제도 개선은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것이나 이러한 변화는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대인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공제조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I. 개요

1. 개관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재산,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지도록 보험회사와 맺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와 사고의 피해자를 보험사고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며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 종목과 달리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I-1〉 참조).

〈그림 I-1〉 배상책임보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이와 같은 배상책임보험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에는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권과 대위권이 있다.²⁾ 일부 국가에서는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³⁾ 경우도 있으나, 한국은 제3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위권(代位權, Subrogation)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또한 대위권이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⁴⁾ 다시 말해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로부터 전가받아 대리로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전가 받으면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바로 대위권인 것이다. 대위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연수원(2014b)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대위권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자위(自衛)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에 회부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소송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2) 한국에서는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함께 보험자의 대위권을 정하고 있음.

3) Richard Banks(2007) 참조.

4) 배상책임보험 약관상의 대위권은 부록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9조를 참조.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는 보험연수원(2014b)의 『배상책임보험』, 지수현(1996), 권용우(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배상책임보험은 구분 기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기초배상책임보험·초과배상책임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과 보상책임보험, 법률상 배상책임보험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지수현(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보험이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활성화 정도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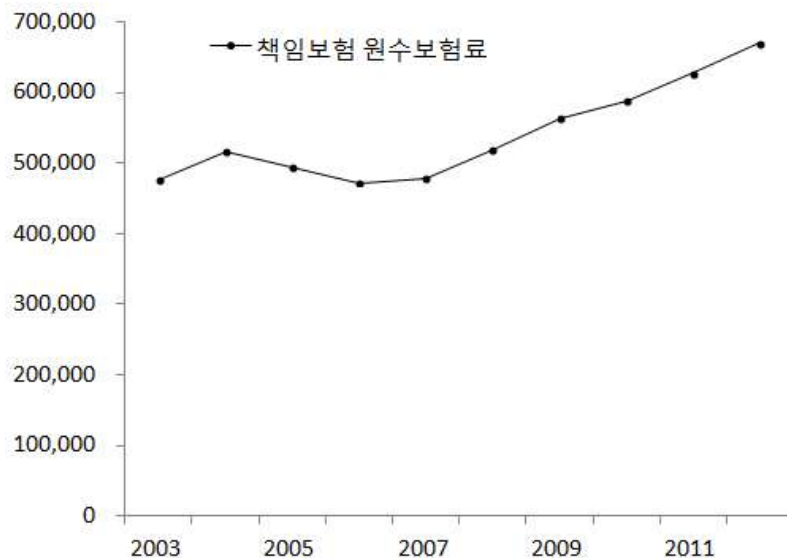
2.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배경

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국가별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정도는 각국에서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험 실무자들은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실적은 미미하다.

〈그림 I-2〉 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세



주: FY 기준,⁵⁾ 원수보험료 단위(백만 원).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2003~2012).

2003년 4,750억 원 수준이던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6,690억 원으로 10년간 41%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그림 I-2〉 참조). 〈그림 I-2〉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5년 이후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증가⁶⁾와 기타(일반) 손해배상소송의 소송 건수 증가(〈그림 I-5〉

5) 2013년까지 보험회사 결산 기준이던 FY(Fiscal Year)는 2014년부터 CY(Calendar Year)로 바뀌었음. 본 보고서의 회계기준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FY(Fiscal Year)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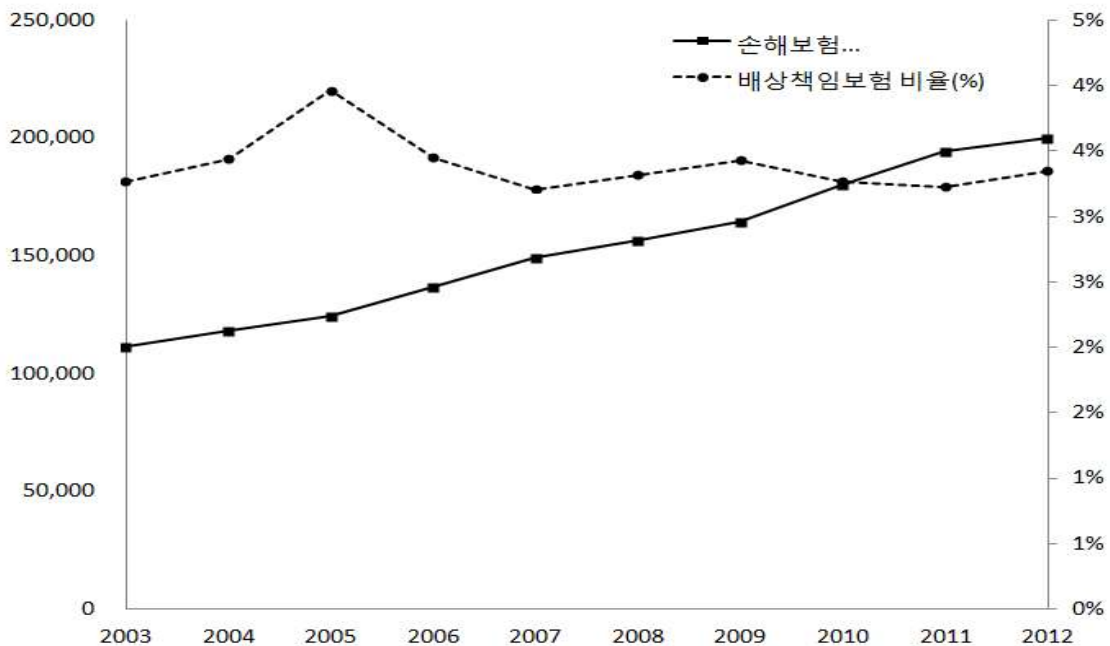
6) 2005년 2월 22일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천만 원 한도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이러한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상향은 배상책임보험에 영향을 미침. 현재 국내에는 다수(40여 개)의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이들의 보상한도는 자동차책임보험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납시관리및육성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유어장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 제3항 등이 정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준용하고 있고 다른 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참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I-3>은 국내 순수보장성손해보험(또는 일반 손해보험)⁷⁾의 원수보험료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I-3>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배상책임보험의 비율

(단위: 억 원)



주: 왼쪽 축(실선)은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장기, 개인연금, 퇴직보험 제외), 오른쪽 축(점선)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표 I-1>과 <표 I-2>는 각각 국가별 손해보험 시장과 배상책임보험 시장 점유율이다.

맞추어 개정되는 경우가 많음.

7) 장기, 개인연금, 퇴직보험 제외.

〈표 I-1〉 2011년 국가별 세계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보험료(백만 USD)	세계시장대비(%)
1	미국	667,107	33.90
2	독일	131,292	6.70
3	일본	130,741	6.60
4	영국	109,486	5.60
5	프랑스	98,359	5.00
6	중국	87,319	4.40
7	네덜란드	79,722	4.10
8	캐나다	69,045	3.50
9	이탈리아	55,426	2.80
10	한국	51,223	2.60
-	기타	488,459	24.80
-	총합	1,968,179	100.00

자료: Swiss Re, sigma #3/2012.

스위스리 재보험회사의 시그마 보고서(〈표 I-1〉 참조)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 손해보험 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독일(6.7%), 일본(6.6%), 영국(5.6%), 프랑스(5.0%), 중국(4.4%), 네덜란드(4.1%), 캐나다(3.5%), 이탈리아(2.8%)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손해보험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 순위는 세계 10위이다. 이렇게 한국의 보험산업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경우 미국이 세계 시장의 54.4%를 차지하여 세계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영국(8.2%), 독일(8.1%), 프랑스(4.9%), 캐나다(3.5%), 이탈리아(3.5%), 일본(3.3%), 호주(2.7%), 스페인(1.9%), 중국(0.8%) 등이 따르고 있다.⁸⁾ 미국의 손해보험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인데 반해 미국 배상책임보험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4%라는 것은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8) 스위스리 재보험회사의 시그마 보고서(2008) 참조.

시장의 규모는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0.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순위 10위)의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보험과 달리 1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이러한 실정은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외국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2〉 2008년 국가별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보험료(백만 USD)	세계시장대비(%)
1	미국	77,200	54.40
2	영국	11,700	8.20
3	독일	11,500	8.10
4	프랑스	6,900	4.90
5	캐나다	4,900	3.50
6	이탈리아	4,900	3.50
7	일본	4,700	3.30
8	호주	3,800	2.70
9	스페인	2,700	1.90
10	중국	1,200	0.80
-	한국	481	0.34
-	기타	12,019	8.46
	총합	142,000	100.00

주: 한국의 통계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에서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를 2008년도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Swiss Re, sigma #5/2009.

나. 연구 목적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추세만으로 볼 때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림 I-3〉 참조). 그러나 자연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손해보험시장에서 성장의 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의 수요는 피보험이익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도가 외국에 비하여 낮다면 이는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높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수준은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주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동시에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양적으로 성장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 민사소송과 배상책임보험

본 절은 국내 민사소송 현황을 소개하고 민사소송과 배상책임보험의 관계를 설명한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된 소송 관련 분석은 『법원통계월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법원통계월보』⁹⁾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I -4>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 비중이 높은 항목의 제1심¹⁰⁾ 소송 접수 건수를 보여준다. <그림 I -4>에 따르면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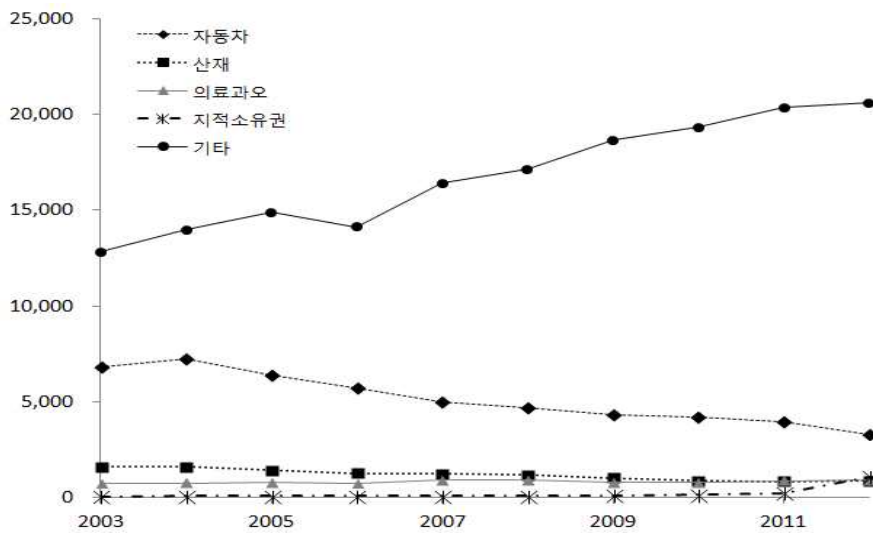
9)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10) 대한민국 법원은 소송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나뉜다. 2012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사소송 건수는 각각 305,086건(82%), 53,235(14%), 12,607(3%)임.

차사고 관련 소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등에 관련된 소송은 소송 건수에 큰 변화가 없고 소송 건수가 작은 편이나 ‘기타’로 분류되는 일반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I-4〉 국내 제1심 손해배상 소송 건수 변화 추세

(단위: 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 〈표 I-3〉 참조.

〈표 I-3〉 종목별 손해배상 소송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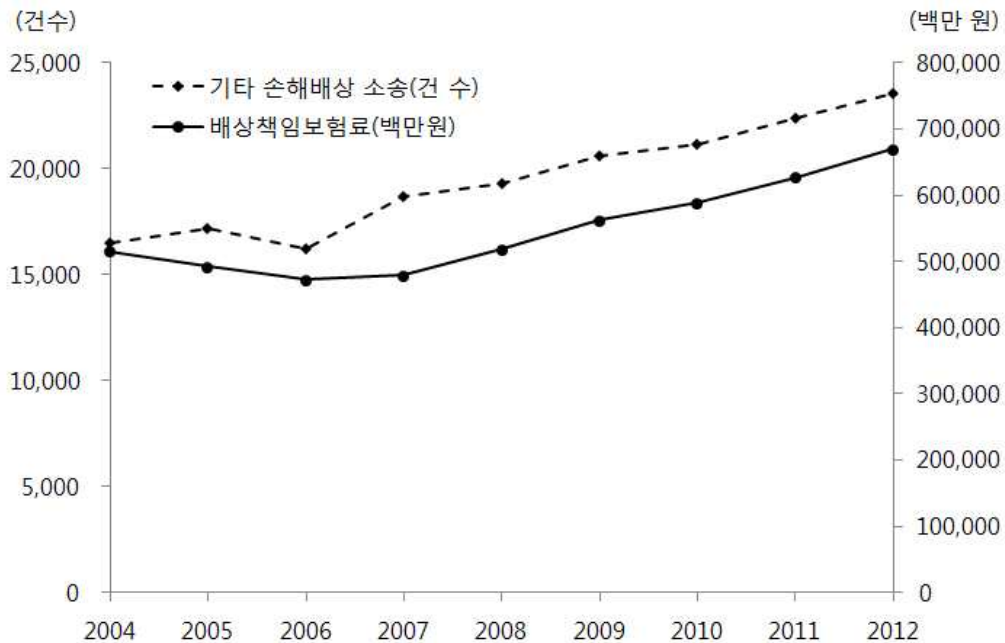
(단위: 건수)

연도	자동차 사고	산업 재해	의료 과오	공해	지적 소유권	기타	계
2003	6,789	1,601	735	22	54	12,848	22,049
2004	7,261	1,606	755	20	87	14,006	23,735
2005	6,374	1,416	772	24	85	14,888	23,559
2006	5,708	1,269	749	16	82	14,136	21,960
2007	4,975	1,234	932	21	89	16,437	23,688
2008	4,679	1,167	894	9	77	17,168	23,994
2009	4,335	1,002	780	31	125	18,667	24,940
2010	4,202	860	782	22	164	19,346	25,376
2011	3,949	830	881	76	238	20,378	26,352
2012	3,301	876	922	65	1,095	20,603	26,862

주: 제1심 기준 접수 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

〈그림 I-5〉 국내 기타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주: 오른쪽 축(실선)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왼쪽 축(점선)은 기타(일반) 손해배상소송 건수.

자료: 민사 소송 자료(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 배상책임보험료(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http://www.kidi.or.kr/>).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타(일반)손해배상 소송과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비교하면 〈그림 I-5〉와 같다. 〈그림 I-5〉에 따르면 기타 손해배상 건수는 2005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2006년 소폭으로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5〉에 따르면 민사소송 건수와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0.9234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차이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라. 연구 방법

본고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제학 모델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특정 종류의 시장규모(원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 = P \times X \quad (1)$$

위 식 (1)에서 M 은 시장 규모, X 는 보험수요,¹¹⁾ P 는 보험료이다. (1)에서 시장규모 M 은 보험료 P 와 보험수요 X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기대값 증가는 보험료 P 의 인상¹²⁾으로 이어지고 손해배상책임 기대값과 변동성의 증가는 보험수요 X 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¹³⁾

위와 같은 보험수요의 메커니즘을 배상책임보험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효용을 Markowitz(1952)의 평균-분산 효용함수(아래 (2))를 이용하여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⁴⁾

$$U(Y; Z) = E(Y^T Z) - \lambda \sigma^2(Y^T Z) \quad (2)$$

Markowitz(1952)는 (2)를 투자자의 효용으로 보고 이를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

-
- 11) 피보험자가 보험을 이용해 담보하는 리스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보다 클 수 없으므로 우리는 X 를 피보험자가 보험을 통해 전기하는 리스크의 비율로 정의함. 예를 들어 $X=0.5$ 는 보험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의 50%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고 $X=1$ 은 손해의 전부를 보험을 통해 담보하는 것임.
- 12) 일반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판매 수량이 많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인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비례하여 인상될 것임.
- 13) 물론 경제 원칙에 따라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킬 때 보험료의 증가는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 14) 손해(L)의 평균($E(L)$)과 분산($\sigma^2(L)$)이 달라지는 경우 위험회피계수 λ 가 변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편의상 주어진 $E(L)$ 와 $\sigma^2(L)$ 로 λ 를 추정함. 경제주체의 효용을 측정하는 다양한 효용함수가 존재하나 Markowitz(1952)의 효용함수 (2)를 이용하는 이유는 (2)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기 때문임.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2)의 입력값인 Y 와 Z 는 각각 ‘투자자의 선택’과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고 $E(Y^T Z)$ 는 포트폴리오 $Y^T Z$ 의 기대값, $\lambda (\geq 0)$ 는 투자자의 위험회피 계수, $\sigma^2(Y^T Z)$ 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다. (2)에서 큰 λ 값을 가진 투자자는 투자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L^{15)}$ 을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라 하면 손해에 의한 피보험자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U(\cdot; L) = E(W - L) - \lambda \sigma^2(W - L) \quad (3)$$

(3)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3)에서 W 는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발생 가능한 손해(L)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는 손해의 기대값($E(L)$)에 소정의 사업비(사업비율: p)를 더한 것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고의 손해액 L 을 전부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E(L)(1+p)$ 가 된다.¹⁶⁾ 보험회사는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거나 또는 $E(L)(1+p)$ 의 일부인 $E(L)(1+p)X^{17)}$ 를 보험료로 받고 보험사고 손해액의 일부(LX)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한다.

위와 같은 보험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여 자산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X 만큼의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효용은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에서 피보험자가 전부보험($X=1$)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 $E(L)(1+p)$ 를 내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L)를 보

15) $L \geq 0$ 이라 가정함.

16) 2011년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자동차 보험과 종합보험 등의 배상책임 담보 제외)의 34%를 차지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고 손해율에 큰 변동성이 없어 손해의 변동성이 요율산출에 반영되지 않음.

17) X 는 0~1 사이의 값임.

협회사로 전가하게 되고 일부보험($0 < X < 1$)에 가입하면 일부(XL)만을 전가하게 된다.

$$\begin{aligned} U(X; L) &= E(W - L) + XE(L) - XE(L)(1 + p) - \lambda\sigma^2(W + (X - 1)L) \\ &= W + E(L)(-1 - Xp) - \lambda\sigma^2((X - 1)L) \end{aligned} \quad (4)$$

(4)의 $E(L)$ 은 손해의 기대값, $XE(L)$ 은 보험금, $XE(L)(1 + p)$ 는 보험료, $\lambda\sigma^2((X - 1)L)$ 은 손해의 분산에 위험회피 계수를 곱한 것이다.¹⁸⁾

(4)를 X 로 미분하여 정리하면 (4)를 극대화하는 X 의 최적값 X^* 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X^* = 1 - \frac{pE(L)}{2\lambda\sigma^2(L)} \quad (5)$$

그리고 X^* 가 알려진 경우 위험회피 계수 λ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hat{\lambda} = \frac{pE(L)}{2\sigma^2(L)(1 - X^*)} \quad (6)$$

피보험자의 효용을 평균-분산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피보험자가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수요(X^*)는 손해(L)의 평균($E(L)$)과 분산($\sigma^2(L)$), 위험회피 계수(λ), 사업비율(p)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수요(X^*)는 사업비율(p)이 낮아지거나, 위험회피 계수(λ)가 커지거나 또는 손해의 기대값/분산 비율($E(L)/\sigma^2(L)$)은 비율이 작아지면 올라간다.¹⁹⁾

본 절의 프레임워크 상에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손해배상책임(L)의 강화에 따른 보험료(P)의 상승, 손해배상액의 변동성($\sigma^2(L)$)과 위험회피 계수(λ)의 증가, 사업비율(p)의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평균-분산 효용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는 손해배상액의 증가, 손해배상액의 변동성 증가, 보험료

18) $\sigma^2(W + (X - 1)L) = \sigma^2((X - 1)L)$ 인 이유는 W 가 상수이기 때문이다.

19) 또는 손해의 변동성 $\sigma^2(L)$ 의 증가임.

감소, 그리고 인식 강화로 인한 위험회피 계수 상승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다.

우리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대값($E(L)$)과 변동성($\sigma^2(L)$) 증가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인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1) 손해배상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 통계를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 모델로 제시
- 3) 2)의 수리 모델을 기반으로 1)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가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고는 위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개발원의 책임보험 통계에 포함되는 순수 배상책임보험 종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과 종합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는 다루지 않는다.

3. 선행연구

이기형·김란·조혜원(1996)은 한국과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과 관련 보험제도와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 등의 법리적인 개념,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소송 등을 조사하였고 김영옥·차일권(1998)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개념, 관련 상품, 해외사례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엄창희(1999)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임원배상책임보험(D&O: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의 개념과 필요성,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언더라이팅 방법과 약관 해설 등을 연구하였다. 이기형·조재현(2003)은 미국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이 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조혜원(2005)

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비교하여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작다는 것을 보였다. 차일권·오승철(2006)은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과실 소송 리스크와 관련 제도, 선진국의 의료 리스크 관리 현황, 의료리스크관리와 의료배상보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계찬(2013)은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제시하였고 김선정(2000)은 임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연구하였으며, 박은경(2012)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연구하였다. 배상책임보험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여러 법학 학회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특별법과 세부 법규의 손해배상책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는 장재옥(1994), 이덕환(2001), 고충곤(2009), 김현수(2012), 김영희(2014), 이동진(2014) 등이 있다. 장재옥(1994)은 미국의 거액 손해배상판결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여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와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장재옥(1994)은 고의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²⁰⁾의 국내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덕환(2001)은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고충곤(2009)은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제도와 사례를 연구하였고 김현수(2012)는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을 고찰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논의가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였다. 김영희(2014)는 관습법의 특성상 형태가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미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를 연구하여 이를 정형화된 틀에서 설명하는 연구는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중의 하나인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 비교는

20) 징벌적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를 전부 보상하도록 하는 전보적손해배상의 손해배상액 이상을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장종운(2014)의 『최신 손해배상실무』, 김광국(2014), 법원행정처(2007),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²¹⁾, 동경변호사회 변호사연수센터일동 운영위원회(2012),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의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행정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을 조사하였으나 한국·미국·일본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비교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경환(2010)은 미국과 독일의 대인사고²²⁾ 손해액산정 방법을 한국과 비교하고 있으나 한국과 흡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장종운(2014), 김광국(2014), 법원행정처(2007),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²³⁾를 각각 한국, 미국, 일본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을 찾는데 활용하였고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미래종합법률사무소(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2010)와 동경변호사회 변호사연수센터일동 운영위원회(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2012)를 참조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서 개인,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장재옥(1994), 김두진(2007), 김현수(2012), 김현수·윤용석·권순현·장다혜(2012), 윤용석(2013) 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은 현재 새로운 법을 민법 또는

21) <http://www.koutuujikobengo.jp>.

22) 인신사고라 부르기도 함.

23) <http://www.koutuujikobengo.jp>.

형법으로 구분하는 국내법체계에 맞지 않고 특정 경제주체에게만 전보적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전보적손해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201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 국내에 추가적인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 가능성을 연 것은 사실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Richard Banks(2007)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호주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한 자료로서 각국의 제도가 제3자 직접청구권, 대위권, 대위책임, 벌금의 담보 가능성, 징벌적손해배상이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John C. Bonnie(2008)는 미국 50개 주에서 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주의 배상책임보험 담보, 관련 판례, 법규 등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특정 종목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특별법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를 비교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전반을 외국과 비교·연구하였다는데 차별성을 가진다.

Ⅱ.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제도 현황

1. 시장 현황

가.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표 Ⅱ-1〉은 최근 10년간 국내 배상책임보험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통계이다. 〈표 Ⅱ-1〉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의 시장 성장률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5.3%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 순수보장성손해보험의 성장률(79.9%)²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폭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2년도 손해보험 각 종목의 손해율이 화재(59.2%), 해상(61.7%), 자동차(84%), 보증(62.3%), 특종(70.8%), 장기(85.8%) 인 것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보험은 매우 낮은 손해율(38%)을 보이고 있다.²⁵⁾ 이렇게 낮은 손해율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²⁶⁾

24) 장기, 연금, 퇴직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03년 11조 1,303억 원, 2012년 20조 22억 원임.

25)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참조.

26) 시장이 활성화되면 보험자들이 경쟁적으로 요율을 제시하여 손해율이 올라감.

〈표 II-1〉 국내 책임보험 보험료와 보험금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보험료			보험금			경과 손해율 (%)
	건수	원수	경과	건수	보험금	손해액	
2003	296,696	466,303	451,147	24,912	114,085	134,391	29.8
2004	303,646	486,308	473,840	27,448	155,681	144,503	30.5
2005	313,540	451,361	446,630	28,333	116,626	115,101	25.8
2006	344,726	426,490	439,642	32,945	134,018	134,845	30.7
2007	442,506	451,219	437,771	39,771	148,232	125,926	28.8
2008	524,352	472,220	472,231	46,302	167,630	192,242	40.7
2009	546,834	490,390	482,983	47,546	184,325	178,132	36.9
2010	590,899	527,041	506,629	54,342	224,865	211,991	41.8
2011	614,697	556,212	536,741	55,499	222,444	281,906	52.5
2012	627,745	584,647	575,141	57,675	247,585	218,397	38.0

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에서 회사별 통계를 합산한 것으로 해약환급금 등이 반영되어 손해보험 통계연보의 통계보다 원수보험료가 작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나. 국내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표 II-2〉 국내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십억 원)

FY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술	책임	상해	종합	해외	기타 특종	기타
03	311	518	7,579	881	195	475	213	835	62	56	5
04	290	503	8,120	833	257	515	277	886	78	73	4
05	320	523	8,358	922	285	493	456	922	60	96	6
06	309	627	9,207	1,001	283	472	657	945	79	99	14
07	304	646	10,336	829	296	479	777	1,014	107	122	8
08	280	845	10,433	1,002	263	519	911	1,046	159	140	10
09	273	796	10,703	1,055	393	563	1,009	1,133	196	191	13
10	263	767	11,845	1,126	387	589	1,187	1,257	219	246	15
11	267	862	12,417	1,317	353	627	1,311	1,374	279	418	136
12	325	812	12,227	1,354	326	670	1,436	1,448	455	909	24

주: 외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손해보험 종목 중 연금, 장기, 퇴직보험 등은 제외.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표 II-3〉은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손해보험의 각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연금, 장기, 퇴직보험을 제외한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이외에 보증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이 각각 시장의 6~7% 정도, 해상과 화재가 각각 4%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한 요율 정체와 타 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비중은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상해보험과 기타특종보험이다. 2003년 시장의 1.9%를 차지하던 상해보험은 상해보험 판매의 약진으로 2012년 시장의 7.2%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타특종보험은 동기에 0.5%에서 4.5%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표 II-3〉 국내 손해보험 종목별 비율

(단위: %)

FY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술	책임	상해	종합	해외	기타 특종	기타
03	2.8	4.7	68.1	7.9	1.8	4.3	1.9	7.5	0.6	0.5	0.0
04	2.5	4.3	68.6	7.0	2.2	4.4	2.3	7.5	0.7	0.6	0.0
05	2.6	4.2	67.2	7.4	2.3	4.0	3.7	7.4	0.5	0.8	0.1
06	2.3	4.6	67.2	7.3	2.1	3.4	4.8	6.9	0.6	0.7	0.1
07	2.0	4.3	69.3	5.6	2.0	3.2	5.2	6.8	0.7	0.8	0.1
08	1.8	5.4	66.8	6.4	1.7	3.3	5.8	6.7	1.0	0.9	0.1
09	1.7	4.9	65.6	6.5	2.4	3.4	6.2	6.9	1.2	1.2	0.1
10	1.5	4.3	66.2	6.3	2.2	3.3	6.6	7.0	1.2	1.4	0.1
11	1.4	4.5	64.1	6.8	1.8	3.2	6.8	7.1	1.4	2.2	0.7
12	1.6	4.1	61.2	6.8	1.6	3.4	7.2	7.2	2.3	4.5	0.1

주: 전체 손해보험 종목 중 연금, 장기, 퇴직보험 등을 제외한 순수보장성손해보험만을 비교하였음.

〈표 II-2〉와 〈표 II-3〉에 따르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서 3.4%로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률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배상책임보험의 세부 종목별 실적

〈표 II-4〉는 최근 10년간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를 세부 종목별로 나누어 보여 준다. 〈표 II-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과 해외근재보험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장형성 기간이 짧은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과 학원배상책임보험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몇몇 종목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외의 종목은 천억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들이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4〉 국내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원)

연도	영업	생산물	국내근재	의사 병원	임원	지자체
2002	134,925	39,712	82,965	16,149	76,100	3,639
2003	133,930	46,135	88,717	17,499	84,039	4,357
2004	158,366	64,262	88,464	21,320	54,350	4,351
2005	145,085	76,405	79,877	19,557	45,277	7,400
2006	153,522	71,946	67,357	22,374	44,285	8,230
2007	178,656	66,144	64,063	22,567	37,481	20,971
2008	160,919	96,665	67,258	23,337	34,614	11,628
2009	174,311	93,043	65,194	11,780	33,780	14,078
2010	175,793	110,286	65,720	28,407	29,641	18,430
2011	183,688	110,984	73,141	30,320	27,394	2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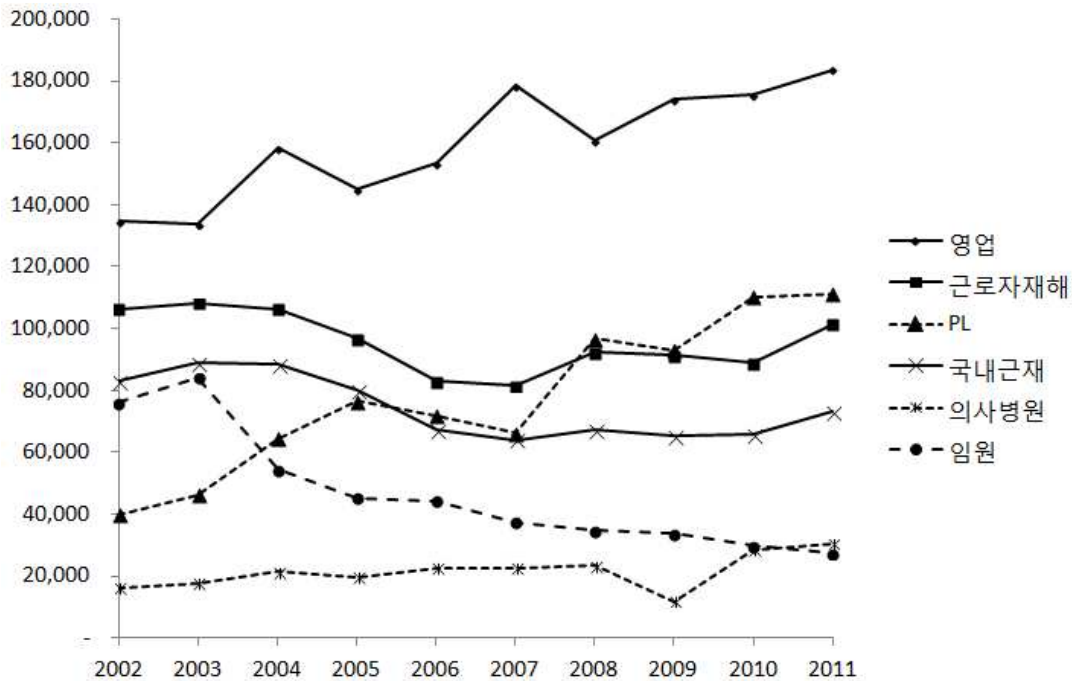
〈표 II-4〉의 계속

연도	해외근재	적재물	체육시설	선원근재	가스사고	놀이시설
2002	6,629	-	4,249	15,592	9,289	-
2003	6,932	-	4,550	11,395	9,738	-
2004	7,570	14,186	5,491	9,140	10,090	-
2005	8,125	11,888	6,729	7,724	10,224	-
2006	7,869	13,047	6,963	6,718	10,413	-
2007	9,668	11,313	7,114	6,845	8,292	-
2008	16,044	8,018	7,145	7,983	7,146	505
2009	15,545	11,868	7,104	9,675	7,456	2,324
2010	13,949	7,776	7,191	8,412	7,399	2,873
2011	18,173	12,204	7,593	9,576	7,089	3,335
연도	학원	수련시설	유도선	직업훈련생	선주	-
2002	-	423	612	1,148	464	-
2003	-	564	671	1,111	503	-
2004	-	704	682	1,058	365	-
2005	-	965	1,399	923	317	-
2006	-	842	536	937	360	-
2007	-	865	686	879	379	-
2008	42	713	705	1,015	394	-
2009	1,699	579	700	852	445	-
2010	2,021	673	711	801	437	-
2011	2,172	727	650	605	414	-

주: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손해보험통계연보 참조. 보험통계연보는 국내근재, 해외근재, 선원근재, 직업훈련생 배상책임 등을 합산하여 이를 '근재'라 함.
 자료: 손해보험통계연보.

〈그림 Ⅱ-1〉 주요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손해보험통계연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빠른 성장은 2002년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 유통회사의 요구에 의한 생산자의 보험 구매, 생산물 관련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2014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배상책임보험을 보유하는 형태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은 2002년 대비 187% 성장하였고 현재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수보장성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전체 순수보장성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중에도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나 타 배상책임보험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제도 현황

본 절은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제도를 민법과 관련 법령 및 판례로 정해지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제도와 경제주체의 특성과 사고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특별법은 법규에 정해진 특정 경제주체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본 저자는 배상책임 보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연구를 위해 경제주체의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에 정해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절차 및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제도가 존재하나 본 절은 민사소송 중 본 보고서와 관계있는 부분만을 소개한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2007), 사법연수원(2013), 장종운(2014), 김광국(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제도

1) 손해의 의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본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차액설과 평가설²⁷⁾이고 한국은 이 중 평가설을 차용하고 있다. 차액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졌을 사고 후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자 이익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고 평가설은 사고의 발생이 피해자에게 가져온 변화를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이 차액설을 기준으로 하는 국

27)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4. 14 선고 93다52372는 합리적인 노동능력의 상실 기준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차액설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가설이 사용되고 있음.

가에서는 사고로 일정 수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수입에 변화가 없었거나 수입이 증가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평가설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사고 후 실제로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에 손실이 있었다면 이를 손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소득기준에서 노동능력의 상실분을 손해로 인정한다.

2) 손해의 구분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상해·장해·사망 등 인적 손해의 유무에 따라 대인사고²⁸⁾와 대물사고로 나누어지고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손해액은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누는 삼분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④ 징벌적손해배상²⁹⁾을 특별법으로 도입하였으나 징벌적손해배상이 명령된 판례가 없고 본 특별법은 특수한 사례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반적인 손해의 구분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³⁰⁾

외국의 경우 삼분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명목적 손해(미국)와 같은 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의 손해는 삼분설이나 변형된 삼분설로 설명될 수 있다. 민법(제393조 1항)은 손해의 규모를 ‘통상의 손해’로만 정하고 있고 삼분설에 따른 각 손해 항목의 규모는 재판을 통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삼분설에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지고,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진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이다. 적극적 손해에는 채무불이행으로

28) 인신사고라고도 함.

29) 고의·악의에 의한 범죄나 반사회적범죄에 대해서 전보적 손해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징벌적손해배상이라 함.

30)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주체의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징벌적배상을 요구함. SBS 보도자료(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27) 참조.

인한 재산의 감소, 사고로 인한 물적 재산의 파손·손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장해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이 포함된다.

〈그림 II-2〉 삼분설에 따른 손해의 구분



일반적으로 일실회익(逸失利益)과 휴업손해와 같이 미래의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가 소극적 손해이다. 일실회익이란 특정 개인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다.

$$\text{사망의 일실회익} = \text{소득기준} \times \text{가동연령}^{31}) \text{을 고려한 현재 계수}^{32}) - \text{생활비} \quad (7)$$

$$\text{장해의 일실회익}^{33}) = \text{소득기준}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34}) \times \text{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 계수} \quad (8)$$

31)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뜻함.

32) 호프만식은 단리식 현재가산방법이고 라이프니츠 방법은 복리식 현재가산방법임. 법원은 위의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하나(대판 1965.9.25. 65다1534, 1983.6.28. 83다19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호프만식을 이용하고(국가배상법 제3조의2, 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의 계산에는 라이프니츠식이 이용됨.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호프만식이 공제자가 적어 피해자에게 유리함.

33)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함.

34) 장중운(2014), pp. 85 참조.

(7)과 (8)에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급여소득자와 사업자와 같이 소득신고를 하여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소득액이 소득기준이 된다.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경영에 있어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과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이 정해진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수령하던 금액이 소득기준이 된다.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무직자와 같이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노임³⁵⁾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된다. 일용노임은 피해자의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일용노임이 농촌지역의 일용노임보다 높고 남자의 일용노임이 여자의 일용노임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소득기준은 일용노임으로 하나 사고를 당한 시기가 졸업에 가까워 졸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공을 고려한 소득기준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가동연령 고려 시 현가(현재가치) 계수에는 호프만 계수(단리식)와 라이프니츠 계수(복리식)가 주로 사용되고, 현가 계산에는 연 5% 할인율³⁶⁾이 적용된다. 연 5% 할인율로 월 할인율을 계산하면 단리 이자는 $0.4167\%(0.05/12)$ 이고 복리 이자는 $0.4074\%(1.05^{1/12} - 1)$ 이다. 단리와 복리로 n 개월 후 1원의 현가는 다음과 같다.

$$\text{단리: } 1/(1 + 0.004167 \times n)$$

$$\text{복리: } 1/(1 + 0.004074)^n$$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츠 계수는 각각 단리와 복리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현가이다.³⁷⁾

생활비가 (7)에만 적용되는 것은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받는 돈의 일부가 생활비로 쓰이게 되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생활비를 자신을 위해 쓸 수 없기 때

3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농가구입가격 지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함, 2013년도 4/4분기 일용노임은 남자(93,507원), 여자(61,915원), 장중운(2014) 참조.

36) 연 5% 할인율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한 것임.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함.

37) <http://www.smartlawyer.kr/jin/main.php?wdm=sp45&type=02> 참조.

문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생존을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지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현가 계수’의 1/3을 생활비로 공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전까지 해오던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을 손해로 평가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손해 중에 하나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징벌적손해이다. 징벌적손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본고는 〈그림 Ⅱ-2〉의 손해 구분을 기준으로 Ⅲ장에서 국내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해외사례와 비교하고, Ⅳ장에서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 기타 손해로 인정되는 비용

한국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에는 진단서 발급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³⁸⁾ 변호사비용 등이 있다. 현재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을 두고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나. 손해배상 관련 특별법

국내외 사례에서 볼 때 배상책임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에는 『제조물책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38)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일당, 여비, 통역료, 번역료 등이 포함됨.

특히 2000년에 도입된 『제조물책임법』은 상품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였다.³⁹⁾ 제조물 배상책임과 관련한 연구는 이기형·김란·조혜원(1996), 위계찬(2013), 개인정보보호와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는 이기형·안철경·기승도·권오경(2010), 보험개발원(2012), 김경환·강민규·이해랑(2014), 환경오염과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는 박은경(2012), 이기형(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사·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년 도입)은 최근 대형 병원들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⁴⁰⁾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중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8월 7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시행령은 ①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제24조)⁴¹⁾,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34조), ③ 책임 CEO에 대한 징계 권고(제65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는 관련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도입은 사업상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경제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시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

39) 2011년의 생산물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1,109억 원으로 2002년의 397억 원 대비 280%의 성장을 보였음(<그림 II-1> 참조).

40)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에 병원이 참여한 비율은 25% 수준에 머물렀음.

YTN 보도자료(http://www.ytn.co.kr/_ln/0103_201408251052521753) 참조.

41)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 수집·이용이 가능함.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외에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배상책임 강화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특별법 관련 연구 사례는 본고의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민사소송 현황

I 장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민사소송 책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법원통계월보』⁴²⁾는 사건을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분류한다. 소송사건은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대인보호사건 등이고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사건 등은 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송사건에서 민사소송은 다시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대여금, 매매대금, 구상금, 손해배상, 신용카드, 보증채무금, 임대차 보증금, 어음·수표, 부당이익, 근저당, 제3자의 청구이익, 기타 등으로 나뉘어진다. 손해배상 소송에 속하는 사건에는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등이 있다.

『법원통계월보』는 전체 민사소송 관련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한 특징(예: 원고 승소율, 소송가액 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민사소송의 통계를 손해배상 소송의 추정치로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절의 통계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통계월보』에 기반을 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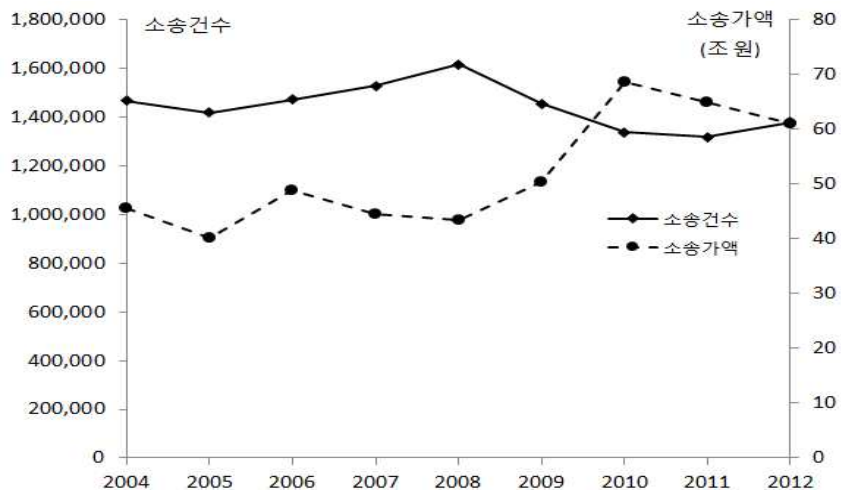
42)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작성되었다.

〈그림 II-3〉은 전체 민사소송(제1심) 소송 접수 건수와 소송가액을 보여준다. 〈그림 II-3〉에 따르면 국내 민사 소송의 건수와 가액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송 건수는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소송가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의 69조 원에서 최근 2년간 8조 원 가량 감소하였다.

국내 민사재판에서 제1심은 재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심급별 사건 수는 제1심 1,409,638건, 항소심 128,237건, 35,777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제1심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II-3〉 민사소송 제1심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



주: 제1심 본안 사건 소송 건수, 본안의 사건(독촉·집행·신청·비송사건) 통계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법원통계월보.

〈그림 II-3〉은 최근 10년간의 제1심 민사소송 건수와 소송가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II-3〉에 따르면 민사소송 건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송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소송가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표 II-5〉는 민사소송의 제1심 소송을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II-5〉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구상금, 신용카드, 임대차보증금, 어음·수표, 보증·채무 등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소송 종목들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5>에서 제1심 접수사건 수에 비해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적은 것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로 인해 실제 소송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존재하나 합의의 경우에도 기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⁴³⁾

<표 II-5> 민사소송 건수(제1심 기준)

연도	부동산 소유권	건물명도· 철거	대여금	매매 대금	구상금	기타	손해 배상
2003	14,052	30,413	37,281	12,639	33,669	55,502	23,774
2004	14,965	29,563	38,405	13,913	32,101	64,685	23,778
2005	17,153	28,873	35,521	14,401	28,638	69,944	23,227
2006	19,008	29,375	33,047	13,173	29,949	142,243	23,831
2007	20,039	30,118	32,143	11,147	33,802	139,143	22,669
2008	18,742	30,459	35,354	14,467	28,697	133,454	22,663
2009	19,822	32,703	41,846	21,110	30,669	84,351	25,960
2010	18,328	31,326	39,043	19,572	29,700	95,362	25,559
2011	17,011	33,189	38,066	20,570	30,013	96,105	26,625
2012	15,561	33,396	44,045	21,052	28,660	97,231	29,268
연도	신용 카드	보증 채무금	임대차 보증금	어음 수표	부당 이익	근저당	제3자의 청구이익
2003	12,982	2,883	6,119	5,131	3,037	1,882	5,415
2004	9,765	3,073	8,848	4,677	3,372	2,068	6,545
2005	4,503	3,072	10,764	4,023	3,493	2,229	7,578
2006	2,314	2,342	8,156	3,767	4,141	2,481	7,572
2007	1,863	1,894	5,559	3,598	4,526	2,633	3,183
2008	3,216	2,460	5,148	3,757	5,246	3,172	7,484
2009	3,502	3,368	7,743	3,810	6,481	3,774	8,877
2010	2,449	2,516	7,015	2,961	6,731	3,945	9,232
2011	1,856	2,338	5,712	2,682	7,055	3,907	10,165
2012	2,484	2,527	6,478	2,114	8,461	3,945	9,864

자료: 법원통계월보.

43) Lisa Bingham, Tina Nabatchi, Jeffrey Senger, Michael Jackman(2009) 참조.

〈표 II-6〉은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소송 건수를 종목별로 나눈 것이다. 자동차사고와 산업재해 소송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과오, 지적소유권, 기타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6〉에서 ‘기타’는 손해배상 소송의 다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손해배상 소송이 ‘기타’에 속한다. 대한민국 법원 분류에 따르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표 II-6〉의 ‘기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6〉 연도별 손해배상 소송 접수 건수

연도	자동차 사고	산업 재해	의료 과오	공해	지적 소유권	기타	계
2003	7,071	1,665	755	21	82	14,180	23,774
2004	6,483	1,326	802	20	134	15,013	23,778
2005	5,808	1,295	867	11	217	15,029	46,167
2006	5,523	1,360	979	130	125	15,714	23,831
2007	4,526	1,035	766	8	70	16,264	22,669
2008	4,019	994	748	38	74	16,790	22,663
2009	4,234	873	911	32	129	19,781	25,960
2010	4,168	876	871	67	184	19,393	25,559
2011	3,500	868	876	85	418	20,878	26,625
2012	3,214	895	1,009	73	1,371	22,706	29,268

자료: 법원통계월보.

대부분의 소송 처리 결과는 소장 각하, 판결(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기타), 소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등으로 나누어진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손해배상 소송 처리 결과는 〈표 II-7〉과 같다.

〈표 II-7〉 2008~2012년도 손해배상 소송 처리 결과

(단위: 건)

연도	합계	소장 각하	판결						이외
			계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패	각하	기타	
'04	23,735	255	9,563	1,656	4,456	3,352	98	1	4,354
	100%	1.1%	40.3%	7.0%	18.8%	14.1%	0.4%	0%	18.3%
'05	23,559	233	10,051	1,735	4,698	3,513	98	7	3,224
	100%	1%	42.7%	7.4%	19.9%	14.9%	0.4%	0%	14%
'06	21,960	133	10,280	1,899	4,802	3,468	105	6	1,267
	100%	0.6%	46.8%	8.6%	21.9%	15.8%	0.5%	0%	6%
'07	23,688	214	11,166	1,838	5,172	4,026	119	11	1,142
	100%	0.9%	47.1%	7.8%	21.8%	17%	0.5%	0%	5%
'08	23,994	200	11,200	1,930	5,101	4,053	109	7	12,594
	100%	0.8%	46.7%	8.0%	21.3%	16.9%	0.5%	0.0%	52.5%
'09	24,940	644	12,172	2,216	5,325	4,479	147	5	12,124
	100%	2.6%	48.8%	8.9%	21.4%	18.0%	0.6%	0.0%	48.7%
'10	25,376	679	12,246	2,197	5,276	4,629	140	4	12,451
	100%	2.7%	48.3%	8.7%	20.8%	18.2%	0.6%	0.0%	49.0%
'11	26,352	790	13,305	2,562	5,732	4,787	212	12	12,257
	100%	3.0%	50.5%	9.7%	21.8%	18.2%	0.8%	0.0%	46.5%
'12	26,862	292	13,328	2,676	5,753	4,734	155	10	13,242
	100%	1.1%	49.6%	10.0%	21.4%	17.6%	0.6%	0.0%	49.3%

주: '이외'는 소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등으로 판결이나 소장 각하가 아닌 처리임.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임. '이외'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조정 15%, 화해 18%, 인낙 0.1%, 기타 5%임.

자료: 법원통계월보.

〈표 II-7〉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50% 내외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재판 사건 중 10% 내외에서 원고가 승리, 20% 내외의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승하고 원고가 패하는 경우가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50%정도에 이르는 것이 비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낮은 손해배상소송 원고 승소율은 경제주체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

〈표 II-8〉 민사소송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

(단위: 건)

연도	소송가액							
	상한							하한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	1억	5억	10억	10억
03	757,052	198,398	68,496	47,871	38,285	33,026	4,256	3,062
	65.81%	17.25%	5.95%	4.16%	3.33%	2.87%	0.37%	0.27%
04	777,695	211,028	71,033	49,248	37,976	35,102	4,430	3,264
	65.36%	17.74%	5.97%	4.14%	3.19%	2.95%	0.37%	0.27%
05	747,908	168,980	68,751	50,910	40,936	35,987	4,492	3,219
	66.71%	15.07%	6.13%	4.54%	3.65%	3.21%	0.40%	0.29%
06	815,898	206,553	101,366	78,936	41,566	36,160	4,776	3,290
	63.32%	16.03%	7.87%	6.13%	3.23%	2.81%	0.37%	0.26%
07	763,654	197,015	95,718	66,813	40,803	40,410	5,337	3,768
	62.93%	16.24%	7.89%	5.51%	3.36%	3.33%	0.44%	0.31%
08	789,581	213,956	96,116	64,080	42,007	42,970	5,774	4,322
	62.72%	17.00%	7.64%	5.09%	3.34%	3.41%	0.46%	0.34%
09	681,388	161,874	72,420	53,016	46,087	47,338	6,492	5,246
	63.45%	15.07%	6.74%	4.94%	4.29%	4.41%	0.60%	0.49%
10	586,623	162,875	75,508	53,237	45,189	46,603	6,211	4,467
	59.82%	16.61%	7.70%	5.43%	4.61%	4.75%	0.63%	0.46%
11	599,142	155,265	70,734	53,635	46,461	48,644	6,224	4,919
	60.83%	15.76%	7.18%	5.45%	4.72%	4.94%	0.63%	0.50%
12	650,263	153,811	71,013	55,886	49,134	52,146	6,476	5,206
	62.29%	14.73%	6.80%	5.35%	4.71%	5.00%	0.62%	0.50%
평 균	716,920	182,976	79,116	57,363	42,844	41,839	5,447	4,076
	63.32%	16.15%	6.99%	5.07%	3.84%	3.77%	0.49%	0.37%

주: 소송가액별 건수와 연도별 비율임. 연도별로 첫 번째 행이 소송 건수, 두 번째 행이 연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상한 1,000만 원은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송 건수, 상한 2,000만 원은 소송가액이 1,000만 원을 넘고 2,000만 원 이하인 소송 건수임. 하한이 10억 원인 경우는 소송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임.

자료: 법원통계월보.

『법원통계월보』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가액만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전체 민사소송의 소송가액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8〉은 민사소송 전체 소송가액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II-8〉에 따르면 대부분 소송(63%)의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이고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낮다. 소송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고는 전체의 0.37%로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은 한국 경제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제도와 관련 통계를 소개하였다. 본고는 다음 장에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수리 모델을 제시한다.

Ⅲ.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진단 및 평가

1. 국내외 시장 비교

가. 국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 비교

〈표 Ⅲ-1〉 주요국의 인당 GDP, 배상책임보험 밀도·침투도

(단위: 백만 USD, %)

국가	기준 연도	인당GDP	배상책임 보험료	손해보험	배상/손해	밀도	침투도
미국	2010	48.0	79,110	426,118	18.57	255.03	0.55
일본	2012	46.0	5,891	98,643	5.97	46.53	0.10
독일	2012	41.0	9,103	75,256	12.10	111.14	0.27
영국	2012	39.0	10,099	127,671	7.91	158.29	0.41
인도	2012	1.5	209	12,623	1.66	0.17	0.01
중국	2011	5.4	2,291	71,483	3.21	1.68	0.03
한국	2011	22.0	567	17,561	3.23	11.34	0.05

주: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단위는 백만 USD로 환산됨, 보험밀도(1인당 배상책임 보험료, 단위: %), 보험 침투도(GDP 대비 배상책임 보험료, 단위: %)
자료: 국가별 통계는 미국(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GIAJ, Factbook), 독일(GDV), 영국(ABI), 한국(손해보험통계연보), 인도(IRDA, Annual report), 중국(중국보험연감).

〈표 Ⅲ-1〉은 주요국의 인당 GDP, 배상책임보험 밀도·침투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Ⅲ-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밀도, 침투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국가별 경제 수준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당 GDP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에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적 요소들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는 대신 피보험이익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나. 주요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

본 절은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각 종목의 활성화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 각 종목의 실적을 미국·영국과 비교한다. 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이 조사된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만이 배상책임보험을 몇 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종목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통계는 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의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구분 기준도 보험개발원과 다르다. 본고는 한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통계를 미국·영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국내의 배상책임통계 종목을 외국의 경우에 유사하게 맞추어 합산하였다.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통계는 제조물, 전문인, 직원배상, D&O(임원배상), 기타로 나누어져 제공된다. 한국에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통계가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영국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장 가까운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을 영국의 전문인배상책임과 비교하였고 직원배상책임보험은 한국의 근로자재해, 국내근재, 해외근재, 선원근재, 직원훈련생을 합산하여 구하였다.

영국의 세부 종목별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제조물배상책임보험(1.97%), 전문인배상책임보험(1.85%), 직원배상책임보험(0.12%), 임원배상책임보험(0.12%), 기타배상책임보험(2.71%)이다.

〈표 Ⅲ-2〉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연도	제조물	전문인	직원배상	임원배상	기타	책임보험	손해보험
2000	875	323	700	-	898	2,796	48,467
	1.81%	0.67%	1.44%	-	1.85%	5.77%	100%
2005	2,237	817	1,832	140	1,214	6,240	70,237
	3.18%	1.16%	2.61%	0.20%	1.73%	8.88%	100%
2010	1,640	1,511	1,041	155	1,936	6,283	73,438
	2.23%	2.06%	1.42%	0.21%	2.64%	8.56%	100%
2011	1,656	1,432	985	150	1,714	5,937	73,750
	2.25%	1.94%	1.34%	0.20%	2.32%	8.05%	100%
2012	1,581	1,487	1,016	99	2,179	6,362	80,433
	1.97%	1.85%	1.26%	0.12%	2.71%	7.91%	100%
평균	1,598	1,114	1,115	136	1,588	5,524	69,265
	2.29%	1.54%	1.61%	0.18%	2.25%	7.83%	100%

주: 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 각 연도의 2번째 행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임.

자료: ABI.

〈표 Ⅲ-3〉 영국 기준으로 합산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단위: 백만 원)

연도	제조물	전문인	직원배상	임원배상	기타	책임보험	손해보험
2000	0	5,579	176,932	30,903	160,871	192,826	8,917,020
	0.00%	0.06%	1.98%	0.35%	1.80%	2.16%	100%
2005	76,405	19,557	193,296	45,277	184,006	493,128	12,441,738
	0.61%	0.16%	1.55%	0.36%	1.48%	3.96%	100%
2010	110,286	28,407	177,762	29,641	223,304	588,687	18,006,120
	0.61%	0.16%	0.99%	0.16%	1.24%	3.27%	100%
2011	110,984	30,320	202,991	27,394	239,366	627,247	19,435,474
	0.57%	0.16%	1.04%	0.14%	1.23%	3.23%	100%
평균	74,419	20,966	187,745	33,304	201,887	475,472	14,700,088
	0.45%	0.13%	1.39%	0.25%	1.44%	3.16%	100%

주: 각 연도의 2번째 행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 연금,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를 제한 금액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영국 기준으로 합산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세부 종목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제조물배상책임보험(0.57%), 전문인배상책임보험(0.16%), 직원배상책임보험(1.04%), 임원배상책임보험(0.14%), 기타배상책임보험(1.23%)이다.

〈표 Ⅲ-2〉와 〈표 Ⅲ-3〉의 비율은 각 배상책임보험 종목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표 Ⅲ-2〉와 〈표 Ⅲ-3〉에서 1%p는 큰 금액이다. 한국의 경우 1%p는 약 2천억 원 수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영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차이는 각각 제조물배상책임보험(1.39%p), 전문인배상책임보험(1.69%p), 직원배상책임보험(0.22%p), 임원배상책임보험(-0.02%p), 기타배상책임보험(1.48%p)이다. 영국에 비교하여 한국 배상책임보험 각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1.69%p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의 통계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따로 집계가 되는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만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이외에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에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1.39%p)과 기타배상책임보험(1.48%p) 등이 있다. 국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에 비하여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일반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기타배상책임보험 종목도 영국이 한국에 비하여 1.48%p 높아 이 두 종목이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원배상책임보험(0.22%p)과 임원배상책임보험(-0.02%p)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두 종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USD)

연도	근로자 재해	의료 사고	기타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손해보험
2005	39,734	9,734	39,103	3,561	92,133	427,381
	9.30%	2.28%	9.15%	0.83%	21.56%	100%
2006	41,820	10,378	42,221	3,622	98,042	447,815
	9.34%	2.32%	9.43%	0.81%	21.89%	100%
2007	40,860	9,959	41,163	3,306	95,287	447,292
	9.14%	2.23%	9.20%	0.74%	21.30%	100%
2008	37,859	9,521	38,589	2,778	88,747	440,072
	8.60%	2.16%	8.77%	0.63%	20.17%	100%
2009	32,951	9,207	36,031	2,366	80,555	422,976
	7.79%	2.18%	8.52%	0.56%	19.04%	100%
2010	32,283	9,096	35,680	2,051	79,110	426,118
	7.58%	2.13%	8.37%	0.48%	18.57%	100%
2011	36,483	8,854	36,264	2,321	83,922	441,632
	8.26%	2.00%	8.21%	0.53%	19.00%	100%
평균	37,427	9,536	38,436	2,858	88,256	436,184
	8.57%	2.19%	8.81%	0.65%	20.22%	100%

주: 각 연도의 2번째 행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자료: SNL Financial LC; I,I,I factbook.

미국은 배상책임보험 통계를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⁴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기타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4가지 종목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각 종목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노동자재해(8.26%), 의료사고(2%), 기타(8.21%), 제조물(0.53%)이다.

44) 미국의 Workers' compensation은 '근로자재해보험' 또는 '노동자재해보험'으로 번역됨. Workers' compensation을 '노동자재해보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본고에서는 이를 '노동자재해보험'이라 부르기로 함. 미국의 '근로자재해보험'은 한국의 '산재'와 '근재'의 역할을 하고 있음.

본고는 한국의 통계를 미국과 맞추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의 배상책임보험 실적을 합산하여 <표 Ⅲ-5>를 작성하였다. <표 Ⅲ-5>에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재해, 국내근재, 해외근재, 선원근재, 직원훈련생 등의 배상책임보험 종목을 합산하여 생성되었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부분에는 한국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사용되었다. 생산물 부분에는 한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사용되었고 기타 부분에는 전체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직원배상책임보험,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뺀 부분이 사용되었다.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배상책임 종목들이 미국에 비하여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다. 종목별로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 차이는 노동자재해(7.4%p), 의료사고(2.04%p), 기타(7.06%p), 제조물(0.09%p)이다.

<표 Ⅲ-5> 미국 기준으로 합산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단위: 백만 원)

연도	노동자 재해	의사·병원	기타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손해보험
2005	193,296	19,557	162,103	76,405	493,128	12,441,738
	1.55%	0.16%	1.30%	0.61%	3.96%	100%
2006	165,760	22,374	166,409	71,946	472,152	13,693,645
	1.21%	0.16%	1.22%	0.53%	3.45%	100%
2007	162,911	22,567	199,596	66,144	478,734	14,918,653
	1.09%	0.15%	1.34%	0.44%	3.21%	100%
2008	184,599	23,337	167,619	96,665	518,587	15,638,159
	1.18%	0.15%	1.07%	0.62%	3.32%	100%
2009	182,531	11,780	203,035	93,043	563,113	16,423,671
	1.11%	0.07%	1.24%	0.57%	3.43%	100%
2010	177,762	28,407	210,585	110,286	588,687	18,006,120
	0.99%	0.16%	1.17%	0.61%	3.27%	100%
2011	202,991	30,320	211,918	110,984	627,247	19,435,474
	1.04%	0.16%	1.09%	0.57%	3.23%	100%
평균	181,407	22,620	188,752	89,353	534,521	15,793,923
	1.17%	0.14%	1.20%	0.56%	3.41%	100%

주: 각 연도의 2번째 행은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 연금,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를 제한 금액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표 Ⅲ-4〉와 〈표 Ⅲ-5〉는 미국의 종목별 배상책임보험이 영국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재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내에서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고 직접 운영하는 산재보험을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재해보험 이외에도 미국의 제조물을 제외한 의료사고와 기타 배상책임보험이 한국에 비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는 본 절에서 분석된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차이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세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 비교

본 절은 한국과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각국의 민사소송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보험계약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I 장에서 소개한 평균-분산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 한국과 미국의 민사소송 통계 분석

미국 민사소송 통계의 가장 최신 자료는 미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2005년 민사소송 통계이다.⁴⁵⁾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연감⁴⁶⁾ 최근 10년치와 미국 법무부가 제공하는 2005년 민사소송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과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비교하였다.⁴⁷⁾

45) <http://www.bjs.gov/> 참조.

46)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참조.

47)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경우 주어진 통계를 활용하여 통계량을 추정하였음.

〈표 Ⅲ-6〉은 2003년~2012년 제1심 민사 소송의 소송가액 통계이다. 〈표 Ⅲ-6〉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소송물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건은 전체의 0.2~0.4% 정도로 전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표 Ⅲ-6〉 제1심 사건 소송가액별 건수

(단위: 건)

연도	소송물 가액 범위(만 원)							
	1,000	2,000	3,000	5,000	10,000	50,000	100,000	100,000+
2003	757,052	198,398	68,496	47,871	38,285	33,026	4,256	3,062
2004	777,695	211,028	71,033	49,248	37,976	35,102	4,430	3,264
2005	747,908	168,980	68,751	50,910	40,936	35,987	4,492	3,219
2006	815,898	206,553	101,366	78,936	41,566	36,160	4,776	3,290
2007	763,654	197,015	95,718	66,813	40,803	40,410	5,337	3,768
2008	789,581	213,956	96,116	64,080	42,007	42,970	5,774	4,322
2009	681,388	161,874	72,420	53,016	46,087	47,338	6,492	5,246
2010	586,623	162,875	75,508	53,237	45,189	46,603	6,211	4,467
2011	599,142	155,265	70,734	53,635	46,461	48,644	6,224	4,919
2012	650,263	153,811	71,013	55,886	49,134	52,146	6,476	5,206

주: 각 항목에서 100,000+는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소송가액의 상한임. 예를 들어 1은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2는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임. 마지막 열은 소송물 가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사건의 발생 빈도임.

자료: 2012 사법통계연감 누계(표 12).

〈표 Ⅲ-7〉은 최근 10년간 민사 소송 자료에서 본고의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먼저 2번째 열의 ‘제1심 사건 수’는 각 연도별로 법원에서 처리된 제1심 사건의 수이다.⁴⁸⁾ 세 번째 열은 전체 제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 다음 두 열은 각 제1심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한 비율과 원고가 일부 승리한 비율이다. 마지막 두 열은 〈표 Ⅲ-6〉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각 제1심 소송의 소송가액 평균과 소송가액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48) 제1심 사건 수가 〈표 Ⅲ-6〉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표 Ⅲ-6〉이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재산권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Ⅲ-7〉 최근 10년간 한국 민사 소송 통계 분석

구분	제1심 사건 수	손해배상 소송			소송가액(만 원)	
		전체대비 비율	비율(%)		기대값	표준편차
			원고승	원고일부승		
2003	1,418,712	9.71	7.0	18.8	2,557	8,378
2004	1,468,257	9.30	7.0	18.8	2,586	8,464
2005	1,419,954	9.17	7.4	19.9	2,719	8,741
2006	1,473,469	7.41	8.6	21.9	2,616	8,283
2007	1,527,607	7.26	7.8	21.8	2,867	9,018
2008	1,617,210	7.21	8.0	21.3	2,925	9,274
2009	1,455,200	8.83	8.9	21.4	3,496	10,697
2010	1,339,057	8.70	8.7	20.8	3,659	10,724
2011	1,318,399	9.02	9.7	21.8	3,746	10,971
2012	1,379,905	9.59	10.0	21.4	3,732	10,964

주: 본고는 〈표 Ⅲ-6〉 각 열 범위의 중간 값을 대표값으로 하고 표 내부의 도수를 분포로 이용하여 〈표 Ⅲ-7〉에서 소송가액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의 추정치를 구하였음. 예를 들어 〈표 Ⅲ-7〉에서 소송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구간의 대표값은 500만 원, 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구간의 대표값은 1,500만 원으로 하고 각 셀의 도수를 확률로 이용하여 소송가액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음.
 자료: 2012 사법통계연감 누계(표 12), 2003~2012 사법통계연감.

〈표 Ⅲ-7〉에 따르면 매년 처리되는 민사소송 제1심은 140만 건 내외이고 최근 처리 소송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2003년 2만 4천여 건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2년에서 3만여 건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다. 일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중은 전체 소송의 50% 내외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중은 10% 이내이고 일부승을 하는 경우가 20% 내외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민사 사건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 또는 일부승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8〉은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리스크 전가 수준 X^* 과 위험회피계수 λ 의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인당 GDP와 연도별 인구 통계이다. 〈표 Ⅲ-8〉에 따르면 한국의 인당 실질 GDP는 2003년 1,982만 원에서 2012년 2,68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구도 2003년도 4,786만 명에서 2012년 5,0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8〉 한국의 인당 GDP와 인구 추이

연도	인당 실질 GDP(만 원)	인구(만 명)
2003	1,982	4,786
2004	2,072	4,804
2005	2,149	4,814
2006	2,249	4,837
2007	2,361	4,860
2008	2,416	4,895
2009	2,416	4,918
2010	2,561	4,941
2011	2,635	4,978
2012	2,684	5,000

자료: 통계청 주요 국가 지표.

〈표 Ⅲ-9〉 인당 손해배상 통계, 보험 수요(X^*), 위험회피계수(λ)의 추정값

연도	1인당					추정값	
	손해배상소 송 건수 ¹⁾	원고승소 건수 ²⁾	배상액 평균 ³⁾ (만 원)	배상액 표준편차 ⁴⁾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⁵⁾ (만 원)	$X^{*6)}$	$\lambda^7)$
2003	0.0029	0.000472	1.21	182.04	0.99	0.66	$1.33/10^5$
2004	0.0028	0.000466	1.21	182.71	1.07	0.71	$1.57/10^5$
2005	0.0027	0.000469	1.28	189.32	1.02	0.64	$1.24/10^5$
2006	0.0023	0.000442	1.16	174.04	0.98	0.68	$1.47/10^5$
2007	0.0023	0.000427	1.22	186.27	0.99	0.64	$1.24/10^5$
2008	0.0024	0.000444	1.30	195.48	1.06	0.65	$1.22/10^5$
2009	0.0026	0.000512	1.79	242.06	1.14	0.51	$7.82/10^6$
2010	0.0024	0.00045	1.65	227.60	1.19	0.58	$9.43/10^6$
2011	0.0024	0.000492	1.84	243.34	1.26	0.55	$8.59/10^6$
2012	0.0026	0.000548	2.05	256.66	1.34	0.52	$8.15/10^6$

주: 1)~5)는 〈표 Ⅲ-6〉, 〈표 Ⅲ-7〉, 〈표 Ⅲ-8〉을 이용하여 인당 손해배상 소송 건수, 원고승소 건수, 손해배상액 평균, 손해배상액 표준편차,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구한 것임.

6)은 피보험자의 보험수요로서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리스크 중 $X \in [0, 1]$ 만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은 I 장의 (4)에 따라 $XE(L)(1+p)$ 이므로 X 의 추정값은 $X = \text{보험료} / [(1+p)E(L)]$ 이 됨. 6)은 4)의 손해배상액 기대값과 5)의 배상책임보험 보험료에 $p=0.25$ 로 하여 구해졌음.

7)은 현재의 보험료 수준이 최적이라는 가정하에 추정된 위험회피계수(λ)의 값임(I 장 (6) 참조).

〈표 Ⅲ-9〉는 〈표 Ⅲ-6〉, 〈표 Ⅲ-7〉, 〈표 Ⅲ-8〉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당 손해배상 소송 관련 리스크와 배상책임보험 수요(X^*)와 위험회피계수(λ)를 추정한 것이다. 〈표 Ⅲ-9〉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손해배상 소송 발생 건수는 0.0025건 내외이고 2003년 0.0029건에 비해 2012년 0.0026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소송 건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인당 원고 승소 손해배상판결 수는 0.000472건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0.000548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한 사람당 손해배상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평균은 2003년 만 2천 원에서 최근 2만 원 수준으로 2003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손해배상책임액의 표준편차도 2003년 182만 원에서 2012년 256만 원으로 약 40%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인당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2003년 만 원 수준에서 2012년 만 3천 원으로 3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의 6)과 7)은 각각 배상책임보험 수요와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한 것이다. 6)의 X^* 는 전체 손해배상책임 중 배상책임보험으로 회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정값이고 7)의 λ 는 한국의 연도별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한 것이다. 〈표 Ⅲ-9〉에 따르면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수요는 2003년 0.66에서 2004년 잠깐 증가하였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이후에는 0.5 정도(50%) 수준에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소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 증가한 소송당 손해배상액,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낮은 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회피계수 λ 는 2003년 1.33/105에서 2012년 8.15/105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손해배상책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주어진 평균-분산 효용함수의 위험회피계수 λ 의 추정값이 주어진 손해배상액의 기대값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⁴⁹⁾

한국 법원이 상대적으로 상세한 연도별 민사소송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데 반해 미국 법원은 수년에 한 번씩 샘플 조사를 통해 수집한 민사소송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49) 이는 효용함수로 소비자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본고는 미국 법무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05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분석하였다.

〈표 Ⅲ-10〉 미국 2005년 민사 소송 판결 통계

사건 유형, 원고승소 건수, 배상중위값(USD)				손해배상액범위(만 USD, %)				
-	-	원고승소 건수	배상중위값	1	5	25	100	100+
총계	-	14,170	28,000	28.7	33.0	24.1	9.9	4.4
불법행위	-	8,455	24,000	32.7	30.6	21.3	10.4	5.0
-	제조물배상	-	-	-	-	-	-	-
-	- 석면	47	682,000	2.1	0	19.1	53.2	25.5
-	- 기타	52	500,000	5.8	32.7	7.7	17.3	36.5
-	의료과실	584	400,000	0.7	5.3	29.1	43.8	21.1
-	불법 감금·체포	8	259,000	37.5	0	12.5	12.5	37.5
-	전문직배상책임	63	129,000	3.2	31.7	22.2	28.6	14.3
-	시설소유·관리자	666	98,000	5.6	30.9	32.9	23.3	7.4
-	기타불법행위	305	83,000	36.1	8.9	27.2	12.5	15.4
-	고의불법행위	429	38,000	28.7	23.8	36.1	7	4.4
-	불법전환	148	27,000	24.3	31.8	37.2	4.1	2.7
-	명예훼손	80	24,000	22.5	40	2.5	22.5	12.5
-	동물공격배상	107	21,000	37.4	32.7	29	0.9	0
-	자동차	5,964	15,000	40	34.8	17.7	5.4	2.1
계약위반	-	5,715	35,000	22.7	36.5	28.3	9.1	3.5
-	피사용자차별	183	175,000	3.3	7.1	70.5	14.8	4.4
-	불법개입	90	169,000	8.9	12.2	34.4	24.4	20
-	동업자분쟁	82	120,000	7.3	24.4	41.5	22	4.9
-	동산소유권분쟁	222	78,000	1.4	15.3	71.6	10.4	1.4
-	사기	660	75,000	16.1	24.1	34.1	18.3	7.4
-	노사분쟁	282	45,000	8.9	45.7	26.6	13.1	5.7
-	임대/임차관련	293	35,000	25.6	38.2	27.3	7.8	1
-	대위권	44	30,000	25	70.5	4.5	0	0
-	기타	134	30,000	21.6	29.9	20.9	11.2	16.4
-	판매자원고	2,177	27,000	23	45.2	24.9	4.9	2
-	구매자원고	1,549	17,000	34.2	35.6	19.9	8.2	2.1

주: 2005년 미국 법무부 통계. 본 통계는 미국 전체에서 접수되는 전체 민사소송(740만 건) 중 주 법원에서 처리된 26,950건의 통계를 제공함. 미국의 주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 등을 처리함. 26,950건 중 원고가 승소한 건은 14,170건이고 원고가 승소한 건의 손해배상액 중위값은 28,000달러임. 손해배상액 범위에서 100+는 손해배상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임. 예를 들어 1은 만 달러 이하, 5는 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등임. 위 표에서 계약위반 부분은 통상의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부분임. 배상중위값은 원고가 승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의 중위값임.
 자료: 미국 법무부 2005년 소송 통계(<http://www.bjs.gov/index.cfm?ty=tp&tid=45>).

〈표 Ⅲ-10〉은 미국 법무부가 2005년에 발표한 미국의 민사소송 통계 자료이다. 〈표 Ⅲ-10〉은 740만 건의 2005년 미국 민사소송 건 중, 미국 주 법원에서 처리된 26,950건의 판례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송가액(〈표 Ⅲ-6〉 참조)을 통계로 제공하는데 반해 미국 법원은 〈표 Ⅲ-10〉과 같이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액 통계를 보여준다.

〈표 Ⅲ-10〉에 따르면 26,950건의 민사소송 중, 원고가 승소한 건이 14,170건이고 14,170건의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명령한 배상액의 중위값은 28,000달러였다. 〈표 Ⅲ-8〉은 미국의 민사소송 통계를 크게 불법행위(Tort Case) 사건과 계약위반(Contract Case) 사건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표 Ⅲ-10〉의 3번째 열과 4번째 열은 각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소송 건수와 소송에서 명령된 배상액의 중위값이다. 〈표 Ⅲ-10〉의 5~9 열은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액 통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조사된 전체 소송 건 중 손해배상액이 만 달러 이하인 건이 28.7%이고 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이하인 건이 33%, 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건이 24.1%, 25만 달러 이상 백만 달러 이하인 건이 9.9%, 마지막으로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건이 전체 소송 건의 4.4%였다.

본 절에서 수행된 분석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미국의 민사소송 통계가 합의와 소액소송 등으로 처리된 사건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국의 민사소송 통계를 미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산하여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에 미국 법무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제공한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효용함수를 이용한 한국과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분석

우리는 본 절에서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미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비교한다.

〈표 Ⅲ-11〉은 미국과 한국의 소송비용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비교하고 있다. 〈표 Ⅲ-11〉의 평균 소송비용은 미국법무부와 한국 사법연감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

대로 추정된 것이다. 미국법무부와 한국 사법연감은 각각 손해배상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백만 달러 이상인 소송에 대한 발생 건수만 제공할 뿐 정확한 평균과 분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표 Ⅲ-11>의 평균과 분산은 실제 값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⁵⁰⁾

<표 Ⅲ-11> 2005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의 통계적 비교

구분		한국(만 원)	미국(USD)
평균 민사소송 비용 ¹⁾		2,719	153,360
민사소송 비용의 표준편차 ²⁾		8,741	134,468
전체 민사소송 건수 ³⁾		1,419,954	7,400,000
전체 인구 ⁴⁾		4,814만 명	295,520,000
전체소송대비 손해배상소송비율 ⁵⁾		9.17%	17.50%
인구당 손해배상 소송 건수		0.0027	0.0044
원고 승소 비율 ⁶⁾		17.35%	52.58%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⁷⁾		49,312,779	92,133,000,000
1인당	손해배상 소송 원고승소 건수 ⁸⁾	0.000469	0.002304
	손해배상액 평균 ⁹⁾	1.28	353.35
	손해배상액 표준편차 ¹⁰⁾	189.32	6,454
	인당 GDP ¹¹⁾	2,149	44,313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¹²⁾	1.02	312
X^* 추정값 ¹³⁾		0.64	0.71
λ 추정값 ¹⁴⁾		$1.24/10^5$	$3.60/10^6$

주: 1) <표 Ⅲ-6>과 <표 Ⅲ-8>의 각 범주별 중간값과 마지막 범주(10억 초과 또는 백만 달러 이상)의 하한값을 대표값으로 하여 구한 민사소송당 평균 비용 추정값임. 한국의 경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통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 민사소송 전체의 평균 비용을 추정하여 사용하였음. 한국의 경우 제1심과 항소심의 접수 건 통계를 이용한 것이고 미국의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 금액을 기반으로 구하였음.

2) 1)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의 표준 편차를 구한 것임.

3) 한국은 2005년도 민사소송 제1심과 항소심 접수 건수이고 미국은 미국 전체의 민사 접수 건수임.

4) 한국과 미국의 2005년도 전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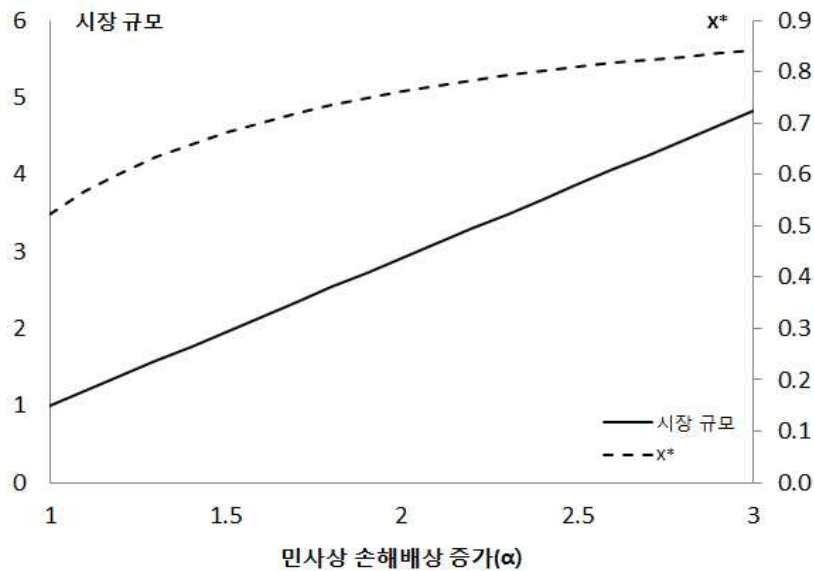
50) 특히 미국의 경우 수천억 달러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이 법원에 의해 명령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액이 백만 달러인 것의 도수만을 제공하는 미국의 통계를 이용할 경우 실제 손해배상액의 평균과 분산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표 Ⅲ-10> 참조)

- 5) 전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 전체 소송 건수 중 '손해배상' 사건 건수를 이용하였고 미국은 불법행위 사건 중 자동차를 제외한 사건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았음.
- 6)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한 비율로 한국의 경우 '원고승+0.5원고일부승'을 원고가 승리한 비율로 하였음.
- 7) 미국은 <표 III-10>의 자료. 한국은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에 따른 각국의 2005년도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임.
- * 8)~12)는 인구당(per capita) 통계 자료임.
- 8) 인구당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건 수임.
- 9) 인구당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기대 손해배상액.
- 10) 인구당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
- 11) 인당 GDP로 미국의 GDP는 World Bank기준이고 한국 GDP는 통계청의 인당 실질 GDP임.
- 12) 인당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각 국의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를 인구수로 나눈 것임.
- 13), 14) <표 III-9>의 주석 참조.

<표 III-11>에 따르면 미국의 민사소송 비용과 소송비용의 표준편차(변동성)는 각각 한국의 5배와 1.5배 이상이다. 전체 민사소송 제1심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17%이고 미국이 17.5%이다. 1인당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한국이 0.0027이고 미국이 0.0044로 미국의 발생 건수가 한국의 1.6배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1인당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로 미국의 평균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액의 표준편차가 각각 한국의 27배와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수치를 기반으로 미국과 한국이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을 통해 전가하는 수준을 평가한 결과⁵¹⁾ 한국과 미국의 X^* 는 각각 0.64와 0.71로 한국의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손해배상 전가가 미국의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위험회피계수(λ) 추정값은 각각 $1.24/10^5$ 과 $3.60/10^6$ 으로 한국의 위험회피계수는 미국의 1/3 수준이다.

51) 미국과 한국의 부가보험료가 수입보험료의 25% 수준이라고 가정하였음. 2005년도 국내 손해보험 업계 전체 사업비율은 22.9%이고 경과 손해율은 77.5%였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참조.

〈그림 Ⅲ-1〉 손해배상책임 증가에 따른 보험수요(X^*)와 시장 규모 변화

주: L 을 민사상 손해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라고 할 때, 국내의 1인당 손해배상책임이 αL 로 변할 때 X^* 와 보험시장 규모($\alpha X^* E(L)(1+p)$)에 나타나는 변화를 그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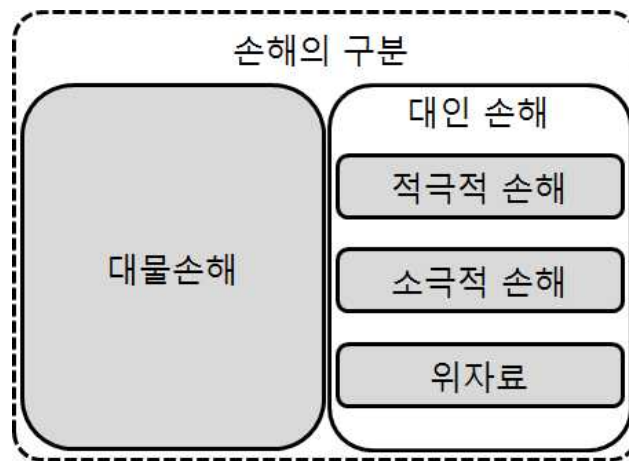
본고는 2012년 한국 민사소송 통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인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L 이 αL 로 변할 때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정하였다. 기초 통계 이론에 따라 확률변수 L' 를 $L' = \alpha L$ 이라고 정의하면 L' 의 기대값과 분산은 각각 $\alpha E(L)$ 와 $\alpha^2 \sigma^2(L)$ 이 된다. 〈표 Ⅲ-9〉의 통계량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책임의 전가 수준인 X^* 는 α 가 1에서 3으로 증가함에 따라⁵²⁾ 21%에서 74%로 53%p 증가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인 $\alpha X^* E(L)(1+p)$ 는 α 가 1에서 3으로 증가하면 4.8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참조).

〈표 Ⅲ-6〉, 〈표 Ⅲ-7〉, 〈표 Ⅲ-8〉과 〈그림 Ⅲ-1〉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제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크기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액⁵³⁾을 결정하므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2) 손해배상책임 수준(α)이 1~3배 증가.

53) Insurable Risk.

〈그림 Ⅲ-2〉 손해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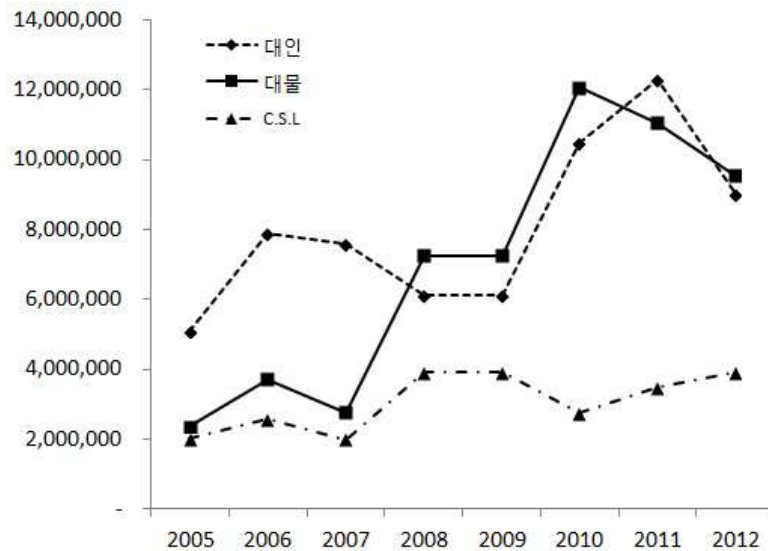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사고의 손해는 〈그림 Ⅲ-2〉와 같이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로 구분될 수 있고⁵⁴⁾ 대인손해는 삼분설에 따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의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Ⅱ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①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항목은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형태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나라별로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② 소극적 손해와 ③ 비재산적 손해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54) 〈그림 Ⅲ-2〉 참조.

〈그림 Ⅲ-3〉 일반배상책임보험 담보별 지급보험금

(단위: 천 원)



주: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담보별(대인, 대물, CSL) 지급보험금. CSL은 대인과 대물을 함께 포함하는 담보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 서비스.

〈그림 Ⅲ-3〉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을 담보별로 나눈 것이다. 〈그림 Ⅲ-3〉에 따르면 2005년도에 ‘대인+대물’ 대비 68% 수준이던 대인 담보 보험금은 2008년부터 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림 Ⅲ-3〉의 수치를 토대로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이 전체 손해배상책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인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3.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제도 비교

〈그림 I-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는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밀접한 관계(상관계수 0.9234)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고 I 장의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 시장의 규모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기대값과 보험수요에 비례하고, 보험 수요는⁵⁵⁾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기대값과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

Ⅱ장의 손해의 구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상해·장해·사망 등 인적 손해의 유무에 따라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나누어진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손해액은 각각 <그림 Ⅱ-2>에서 설명한 손해의 삼분설에 따라 평가된다. 대물사고의 경우 손해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한국과 외국의 손해배상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

본 절은 한국·미국·일본의 대인사고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가. 한국

1) 손해의 구분

본 절은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삼분설에 따라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설명한다.

2) 적극적 손해

한국에서 대인사고에 대하여 인정하는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간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입원비, 약값, 진료비 등이 있고 의수, 의족 등 여러 번 구매가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은 다수의 보조기구 구매비용의 현가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용노임을 간호비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간호를 하는 경우와 전문 간호인이 간호를 하는 경우 모두 일용노임 수준의 간호비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는 성인 여성 1인 간호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추가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는 1일 여성 1인 이상의 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례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

55) 피보험자의 효용을 평균-분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가정의례준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만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의 장례비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3)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손해로서 일실수입과 휴업손해가 이에 속한다.

(1) 일실이익의 계산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⁵⁶⁾을 이용하여 계산되고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8)⁵⁷⁾이 이용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기존소득이 소득기준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임금 노동자는 사고 전 지불받고 있었던 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인정되고 사업 소득자는 사업 소득액 중 비용을 제한 부분이 소득기준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 전까지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미취학 아동, 학생이나 주부, 무직자와 같이 소득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된다. 일용노임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시·농촌)과 피해자의 성별(남자·여자)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은 사고 전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기준을 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되나 졸업의 개연성이 높은 의과대학생·공과대학생, 농고·상고·공고 등의 경우에는 통계에 따른 유사업종 평균 수입이 소득기준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을 소득기준에 적용하지

56) 사망의 일실이익 =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 계수 - 생활비

57) 장애의 일실이익 = 소득기준×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령을 고려한 현재 계수

않고 있으나 사고 이후 가까운 시점에서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정할 수 있다.

(7)과 (8)에서 가동연령은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로서 남자는 통상 22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법원은 통상적으로 직종별 가동연령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남자의 가동연령이 여자보다 늦은 22세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법원이 남자의 경우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내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기준표나 미국 의학협회 평가기준⁵⁸⁾ 등을 근거로 하여 정해진다. 노동능력 상실률의 계산은 장종운(2014)과 김광국(2014)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일실이익은 장래에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올릴 수 있는 수입으로서 미래 수입의 현재가치가 가해자에게 일괄적으로 청구된다. 국내 법원은 단리식 현가 계산 방법(호프만 법)과 복리식 현가 계산 방법(라이프니츠 법)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이율 5%가 적용될 경우 단리식 현가 계산방법이 피해자에게 더 많은 손해를 배상한다.

(7)과 (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생활비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단, 사망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생활비를 친권자나 의무부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2) 휴업손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 실무는 판례⁵⁹⁾에 따라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58) AMA기준이라고도 함.

59) 대판 2003.12.12. 2003다49252, 2000.6.9. 99다49521.

4) 위자료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인격, 정조상실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판례는 위자료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법원은 5~6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의 상한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8천만 원으로 상향된 기준이 반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부터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위자료 상한선이 8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적용되고 있다.⁶⁰⁾ 실무에서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지급위자료} = \text{위자료 상한}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1 - \text{피해자과실비율} \times 0.6)$$

위자료는 국가의 경제 및 의식 수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위자료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박창수(2009)는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현재 손해배상 실무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과 소액의 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배상액의 산정이 아동의 교육기회 상실이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 등을 보상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아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교육기회 상실과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고 독일은 아동의 교육기회 상실과 추가 교육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김덕태(1998)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김학수(1988)는 한국의 위자료 산정 방식이 타 국가에 비하여 경직되어 있고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60) 법률신문(2009. 11. 30) 참고.

나. 미국

미국의 손해배상 제도는 주별로 조금씩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손해배상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행정처(2007)는 이러한 주별 차이를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미국의 손해배상 제도를 연구·비교하였다. 본 절에서는 법원행정처(2007)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설명한다.

1) 손해의 구분

미국은 한국과 조금 다른 손해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손해 구분에서 한국과 확연히 다른 점은 미국은 명목적 손해(Nominal Damages)와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였으나 미국과 같이 징벌적손해배상을 일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

명목적 손해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인정되나 실제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는 손해로서 명목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액은 1 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정해지나 경우에 따라 100 달러에서 200 달러까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배심원제도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제도상 가장 큰 차이점은 배심원제도이다. 한국에도 2008년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도와 매우 다르다. 먼저 배심원제도는 소송 관할법원이 속한 지역의 성인 주민들 중 배심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고 선택된 배심원들은 판결과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

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심원제도는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피해자인 개인이 가해자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인인 배심원들은 친기업적인 판결을 내리기보다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제도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빈번하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심원제도는 개인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독일·일본·한국과 같이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수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나 배심원제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인인 배심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륙법체계하의 판결과 달리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3) 적극적 손해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교통비, 감정비용 등이 있다.

(1) 변호사 비용

미국의 적극적 손해 관련 제도 중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는 미국의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인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의 지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⁶¹⁾

61) 한국에서는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함.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에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만에 하나 피해자가 패소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나 미국에서는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을 각자 지불하므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데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치료비와 관련 부대비용

한국과 같이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손해액이 수식에 따라 계산되나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손해액을 결정해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인정되므로 상해·장해에 대한 치료비 이외에 정신과 상담, 지압, 성형, 휠체어 차량, 재활을 위한 침대 등 물품 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⁶²⁾

한국과 미국의 경우 모두 치료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인정되나 한국에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비 수준이 높으므로 유사한 치료에 대하여 미국의 손해액이 한국의 손해액보다 높게 산정된다.

(3) 개호비(간병비)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한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 1인의 일용노임⁶³⁾ 기준의 개호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다양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족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에게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일용노임 수준으로만 이를 보상한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개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주는 부모가 아동을

62) 법원행정처(2007), pp. 35 참조.

63) 장중운(2014), pp. 158~159 참조.

직접 개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의 개호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⁶⁴⁾

(4) 교통비

미국은 피해자 본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뿐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피해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교통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4) 소극적 손해

(1) 일실이익 산정 방법

일실이익의 계산에서 미국은 한국과 같이 평가설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일실이익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벌 수 있었던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 직전의 수입을 소득기준으로 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한다.

먼저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고 전 수입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나 미국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은 한국의 산정방법과 근본적으로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이 정해진 산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전문가가 피해자가 사고를 입지 않았을 경우 미래에 벌어들였을 수입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로 구성한 것이 일실손해의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발생시키는 차이 중에 하나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의 적용이

64) 법원행정처(2007), pp. 38 참조.

다. 국내의 손해배상 실무는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물가상승률과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임금 상승 등이 일실이익 계산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일실손해를 산정하는데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중에는 VALE(Vocational Assessment of Lost Earnings)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미국의 손해배상액 산정 전문가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경력, 신체 장애율 등을 VALE에 적용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의 추정값을 구하고,⁶⁵⁾ 이러한 추정값은 법원에서 정당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비경제활동 인구의 일실이익⁶⁶⁾

미국과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는 비경제활동 인구⁶⁷⁾의 일실이익 계산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여 정해진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반해 미국은 일반인인 배심원이 수궁할 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일실이익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최저임금이나 보통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미래에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평균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는 개인적 가능성은 미성년자의 교육 수준 및 성취도, 부모의 직업·재산·학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에서 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한다. 반면에 미국은 피해자인 주부나 주부의 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65) 법원행정처(2007), pp. 45~46 참조.

66) 법원행정처(2007), pp. 47~53 참조.

67) 주부, 미취학아동, 학생, 무직자 등.

록 대체인력비용 분석, 기회비용 분석, 기능적 분석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황이 고려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 대체인력비용 분석법은 가정주부가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정주부가 평소에 수행하던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회비용 분석법은 전업주부이나 다시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부가 사고로 이러한 기회를 잃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분석법은 주부가 수행하는 요리, 세탁, 자녀양육, 청소, 다림질, 가족에 대한 보살핌, 간호 등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무직자에 대해서도 다른 비경제활동 인구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한다. 한국이 무직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용노임을 적용하는데 반해 미국은 무직자의 경우라도 다시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무직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한다.

(3) 가동기간과 기대여명⁶⁸⁾

미국의 가동연령과 기대여명 계산방식은 한국과 유사하나 한국이 일반적인 경우 60세⁶⁹⁾를 가동연령의 종료 시점으로 보는데 반해 미국은 65세를 가동연령 시점으로 보고 건강, 직업, 교육수준, 등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가동연령의 종료 시점을 조정한다.

(4) 현가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손

68) 법원행정처(2007), pp. 54~57 참조.

69) 한국에서도 직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인정됨. 예를 들어 변호사·법무사 70세, 의사 65세, 보육교사 57세, 간호학원 강사 65세, 목사 70세, 암자(불교) 경영자 60세 등의 가동연령 종료 시점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농촌노동자의 경우에는 60세가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인정됨(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25852 판결). 장중운(2014), pp. 106~126 참조.

해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⁷⁰⁾

한국이 민법으로 정해진 법정이율 5%⁷¹⁾를 이용하여 일실회에서 공제하는데 반해 미국은 시장 이율(Market Interest Rate)이나 국고채 이율을 이자율로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일실회를 할인하고 있다.

1983년을 기준으로 관습법(또는 영미법) 국가들은 영국 4.75%, 캐나다 7%, 호주 2%를 각각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고정 이율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실회의 산정에서 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거나 ② 실제 이자율을 할인율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③ 할인율을 0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위자료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자료이다.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가 8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위자료를 정하는데 반해 미국은 손해배상의 재산적 손해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위자료 수준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배심원들이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⁷²⁾에 따라 현재 여러 주가 비재산적 손해의 상한선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로 정하였다.⁷³⁾ 미국은 육체적 고통, 결혼생활의 장애, 미성년자의 피부양 상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70) John G. Fleming(1986), "Tort Damages for Loss of Future Earnings", 34 Am. J. Comp. L. Su, pp. 141, 144.

71) 민법 제 397조.

72) 1970년대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높아져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큰 제약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미국의 여러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73) 법원행정처(2007), pp. 57~68 참조.

추상에 대한 수치심, 삶에 대한 상실감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의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6) 징벌적 손해

손해배상에 있어 관습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과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이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징벌적손해배상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은 미국, 영국과 같이 관습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제도로써 반사회적, 반인륜적, 고의적, 또는 중과실적(Gross Negligence) 불법행위를 징벌하기 위해서 전보적 손해배상⁷⁴⁾ 이상의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의 취지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고의적, 또는 중과실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제주체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미국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징벌적손해배상이 명령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다.⁷⁵⁾ 하지만 높은 액수의 징벌적손해배상 명령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변동성을 크게 높여 경제주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Ⅲ-12〉는 최근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명령 사례 중 금액이 큰 것을 발췌한 것이다. 〈표 Ⅲ-12〉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대 백조 원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액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12〉와 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징벌적손해배상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백, 수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손해배상은 기업들은 파산시킬 수 있고 경제주체들에게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각 주는

74) 손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75) 미국 법무부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원고 승소 판결 중 5%에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됨.

1970~80년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을 수행하였다.

〈표 Ⅲ-12〉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사례

판례(주)	연도	손해액(백만 USD)	
		징벌적	전보적
Avery v. State Farm Mutual Insurance Automobile Co. (Illinois)	'99	600	130
Miles v. Philip Morris Inc. (Illinois)	'03	3,100	7100
Cowart v. Johnson Kart Manufacturing Inc. (Wisconsin)	'99	1,000	24
Grefer v. Alpha Technical Services Inc. (Louisiana)	'01	1,000	56.13
Hayes v. Courtney (Missouri)	'02	2,000	225
Pennzoil Co. v. Texaco Inc. (Texas)	'85	3,000	7530
Boeken v. Philip Morris Inc. (California)	'01	3,000	5.54
In re New Orleans Tank Car Leakage Fire Litigation (Louisiana)	'97	3,365	2
Anderson v. General Motors Corp. (California)	'99	4,775	107.6
In re: The Exxon Valdez (Alaska)	'94	5,000	287
Bullock v. Philip Morris Inc. (California)	'02	28,000	0.65
Engle v. R. J. Reynolds Tobacco Co. (Florida)	'00	145,000	12.7

자료: W. Kip Viscusi(2004), The Blockbuster Punitive Damages, Harvard Law School Discussion Paper(http://www.law.harvard.edu/programs/olin_center).

징벌적손해배상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인 것을 사실이나 미국의 모든 주가 상한이 없는 징벌적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2007)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27개 주는 원고가 징벌적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17개 주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13개 주는 징벌적손해배상을 주 정부로 귀속시키고 있다.⁷⁶⁾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2007)와 권수현 외(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76) 법원행정처(2007), pp. 194~195 참조.

다. 일본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대인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국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본 절은 일본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비교한다.

1) 손해배상액의 정형화

일본은 1965년경부터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여 한국과 유사한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⁷⁷⁾ 일본의 일변론헬교통사고상담센터 동경지부는 1969년부터 매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를 포함함 ‘민사교통사고소송손해배상 산정액 기준’을 동경삼변호사회, 교통사고처리위원회와 함께 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손해배상 실무는 이러한 발행물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⁷⁸⁾

한국이 미국의사협회 후유장애등급기준을 사용하기 전까지 맥브라이드 표를 이용 한데 반해 일본은 ‘자동차배상책임법’에서 발표되는 ‘후유장애등급표’⁷⁹⁾를 장애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은 ‘노동성 노동국장 통첩 별표’의 ‘노동능력 상실률표’⁸⁰⁾에 따라 결정된다.

2) 적극적 손해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치료관계비, 부침간호비(한국의 개호비), 잡비, 통원 교통비, 숙박비, 의사 등에 대한 사례, 학습비, 장구·기구 등 구입비, 장의관계비, 변호사 비용 등을 직접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⁸¹⁾

77) 법원행정처(2007), pp. 396 참조.

78) 법원행정처(2007), pp. 397 참조.

79) <http://www.jiko-online.jp/toukyuu/kouihyou.htm> 참조.

80) <http://www5d.biglobe.ne.jp/Jusl/IssituRieki/Sousituritu.html> 참조.

81) 법원행정처(2007) pp. 401~403 참조.

3) 소극적 손해

일본은 한국과 같이 휴업손해와 일실이익 등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미국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1) 경제활동 인구의 소극적 손해

일본은 한국·미국과 같이 사고 이전에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미래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기존소득을 소득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한다.

(2)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극적 손해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임금 센서스의 남녀별 전연령 평균 임금⁸²⁾을 주부, 미취학 아동, 학생의 소득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무직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취업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남녀별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가동연령

일본은 가동연령의 개시 시점을 18세로 하고 종료 시점을 67세로 하고 있으며 67세가 넘는 고령자는 평균여명의 1/2을 가동연령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한국보다 긴 가동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대학생의 가동연령의 개시 시점은 22세로 하고 있다.⁸³⁾

82) <http://www.mlit.go.jp/jidosha/anzen/04relief/resourse/data/kyuuyo.pdf> 참조.

83) <http://www.koutuujikobengo.jp/shibou-issshiturieki/> 참조.

(4) 공제이자

한국이 호프만식(단리)와 라이프니츠식(복리)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1999년 이후 교통사고 총괄 판사가 라이프니츠식을 일실회익 산정방식에 관한 공동제언으로 발표하여 일본은 라이프니츠식만을 공제이자 산출 방식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5% 법정이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장이율을 고려하여 3~4%의 할인율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⁸⁴⁾

(5) 생활비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가 사망 사고 일실회익의 1/3을 생활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피해자의 피부양자 수에 따라 다른 생활비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는 생활비의 50%를 공제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35%를 공제한다.⁸⁵⁾

4) 위자료

일본은 대인사고를 상해 사고, 후유장애 사고, 사망 사고로 나누어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먼저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은 일반 상해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치료 또는 통원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다. 일반 상해사고의 위자료는 피해자가 상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높아지는데 1개월 입원에 대한 위자료는 52만 엔 정도로 한국에 비하여 일반 상해에 대해서 지급되는 위자료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⁸⁶⁾

84) 법원행정처(2007), pp. 406 참조.

85) 일본의 어떤 보험회사는 피부양자 수에 따라 3명 이상(30%), 2명(35%), 1명(40%), 없음(50%)을 공제하기도 함.

86) <http://www.jiko-online.com/isya.htm> 참조.

〈표 Ⅲ-13〉 일본 상해 사고 중상 위자료

(단위: 만 엔)

구분	입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통원	-	53	101	145	184	217	244	266	284	297	306	314	321	328	334	340
1	28	77	122	162	199	228	252	274	291	303	311	318	325	332	336	342
2	52	98	139	177	210	236	260	281	297	308	315	322	329	334	338	344
3	73	115	154	188	218	244	267	287	302	312	319	326	331	336	340	346
4	90	130	165	196	226	251	273	292	306	316	323	328	333	338	342	348
5	105	141	173	204	233	257	278	296	310	320	325	330	335	340	344	350
6	116	149	181	211	239	262	282	300	314	322	327	332	337	342	346	-
7	124	157	188	217	244	266	286	304	316	324	329	334	339	344	-	-
8	132	164	194	222	248	270	290	306	318	326	331	336	341	-	-	-
9	139	170	199	226	252	274	292	308	320	328	333	338	-	-	-	-
10	145	175	203	230	256	276	294	310	322	330	335	-	-	-	-	-
11	150	179	207	234	258	278	296	312	324	332	-	-	-	-	-	-
12	154	183	211	236	260	280	298	314	326	-	-	-	-	-	-	-
13	158	187	213	238	262	282	300	316	-	-	-	-	-	-	-	-
14	162	189	215	240	264	284	302	-	-	-	-	-	-	-	-	-
15	164	191	217	242	266	286	-	-	-	-	-	-	-	-	-	-

주: 첫 번째 행과 열은 각각 입원 월 수, 통원 월 수임.

자료: <http://www.jiko-online.com/isya.htm>.

〈표 Ⅲ-14〉 일본 상해 사고 경상 위자료

(단위: 만 엔)

구분	입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통원	-	35	66	92	116	135	152	165	176	186	195	204	211	218	223	228
1	19	52	83	106	128	145	160	171	182	190	199	206	212	219	224	229
2	36	69	97	118	138	153	166	177	186	194	201	207	213	220	225	230
3	53	83	109	128	146	159	172	181	190	196	202	208	214	221	226	231
4	67	95	119	136	152	165	176	185	192	197	203	209	215	222	227	232
5	79	105	127	142	158	169	180	187	193	198	204	210	216	223	228	233
6	89	113	133	148	162	173	182	188	194	199	205	211	217	224	229	-
7	97	119	139	152	166	175	183	189	195	200	206	212	218	225	-	-
8	103	125	143	156	168	176	184	190	196	201	207	213	219	-	-	-
9	109	129	147	158	169	177	185	191	197	202	208	214	-	-	-	-
10	113	133	149	159	170	178	186	192	198	203	209	-	-	-	-	-
11	117	135	150	160	171	179	187	193	199	204	-	-	-	-	-	-
12	119	136	151	161	172	180	188	194	200	-	-	-	-	-	-	-
13	120	137	152	162	173	181	189	195	-	-	-	-	-	-	-	-
14	121	138	153	163	174	182	190	-	-	-	-	-	-	-	-	-
15	122	139	154	164	175	183	-	-	-	-	-	-	-	-	-	-

주: 첫 번째 행과 열은 각각 입원 월 수, 통원 월 수임.

자료: <http://www.jiko-online.com/isya.htm>.

〈표 Ⅲ-15〉 일본의 장애 등급별 위자료

(단위: 만 엔)

장애등급	위자료	장애등급	위자료
1	2,800	8	830
2	2,370	9	690
3	1,990	10	550
4	1,670	11	420
5	1,400	12	290
6	1,180	13	180
7	1,000	14	110

자료: <http://www.jiko-online.com/isya.htm>.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일본은 〈표 Ⅲ-16〉에 따라 위자료 산정하고 있다. 한국이 8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위자료를 책정하는데 반해 일본은 사고에 의한 후유증으로 장애 1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억 8천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표 Ⅲ-16〉 일본의 피해자 사망 위자료

(단위: 만 엔)

가족 내에서의 지위	위자료
가장	2,800
어머니 · 배우자	2,400
기타	2,000~2,200

자료: <http://www.jiko-online.com/isya.htm>.

마지막으로 일본은 사고의 피해자가 가족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장, 어머니 · 배우자, 기타)에 따라 〈표 Ⅲ-16〉과 같이 다른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표 Ⅲ-16〉에 따른 사망 위자료 이외에 청구권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의 사망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이 지내던 친척에게 청구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청구권자 수에 따라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1인인 경우 550만 엔, 2인인 경우 650만 엔, 3인 이상인 경우에는 750만 엔으로 되어 있다.⁸⁷⁾

87) <http://www.koutuujikobengo.jp/shibou-isharyou> 참조.

라. 국가별 비교

〈표 Ⅲ-17〉과 〈표 Ⅲ-18〉은 각각 민사상 국가별 손해배상 관련 제도와 국가별 일일이익과 위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표 Ⅲ-17〉은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대인 사고의 가해자에게 강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침투도가 가장 큰 나라들인 미국(침투도 0.55)과 영국(침투도 0.41)은 배심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연성을 고려한 개인차의 인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침투도 0.05)과 같이 대륙법체계를 가진 독일(침투도 0.27)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와 교육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차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시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⁸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대인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침투도 0.1)도 한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 제도 중 외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① 일용노임을 아동·주부·학생·무직자의 소득기준으로 이용, ② 낮은 가동연령 종료 시점, ③ 남녀간의 가동연령 차별, ④ 시장이율을 넘어서는 이율의 적용, ⑤ 낮은 위자료 수준 등이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저하시키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반대로 위와 같은 항목에서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의 강화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것을 사실이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은 꾸준히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8) 김학수(1988), 김덕태(1998), 박창수(2009), 법원행정처(2007) 참조.

〈표 Ⅲ-17〉 주요국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손해의 정의	명목적 손해, 보상 손해, 징벌적 손해로 구분	비재산적 손해, 재판 이전 재산적 손해, 재판 후 재산적 손해로 구분	차액설 인정, 손해의 목표를 원상회복으로 정함. 손해를 특별손해와 통상손해로 나누지 않음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
특징	배심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여.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 제도 발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배심원은 피고의 유죄·무죄여부의 결정에만 참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된 부분이 다수 존재	무과실 책임주의 광범위하게 인정.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에게로 전가된 부분이 다수 존재	한국에서도 특정 부분에서 특별법으로 무과실책임 인정
배심원제	대부분의 주에서 배심원에 의한 배상액 인정. 일부 주는 판사가 조정 또는 판사가 배상액 결정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판결의 핵심이었으나 배심원 참여 없이 진행되는 형사 재판제도가 최근 도입되었음	배심원제도 없음 (1924년 폐지)	배심원제도 없음	배심원제도 없음
징벌적 손해	민사에 광범위하게 적용	민사에 광범위하게 적용	원상회복주의, 징벌적 손해를 기본적으로 불인정함. 위자료로서 징벌적 요소 도입	제재적 위자료의 판결 존재	일부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판례 없음
위자료	위자료가 실제 손해액을 넘는 경우 자주 발생. 다양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한국과 달리 사고로 하지 못하게 된 활동이나 가족의 부양 의무 감소 등 다양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로 인정함	위자료는 손해를 직접 입은 개인에게만 인정함	한국과 유사한 위자료 산정 방법을 활용하나 위자료 수준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음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산정
일이익	피해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집단의 평균 이익을 일실 이익으로 인정	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수입이나 국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주부의 경우 대체고용 비용을 일실수입으로 인정	재활과 재교육 비용 손해로 인정. 교육 및 소득활동 지연 비용 인정. 평균임금을 일실 이익 소득기준으로 인정. 개인차 인정	기존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임금노동자의 평균 소득 인정	기존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이용

〈표 Ⅲ-18〉 한국·미국·일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산정 방법 비교

	미국	일본	한국
임금노동자	사고 전의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개연성이 높은 임금인상 인정		
	물가상승률 인정	물가상승률 불인정	
주부	대체인력비용 분석법, 기회비용 분석법, 기능적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부에 대한 일실이익 충분히 인정	인구 센서스에 따른 여성의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아동	피해자와 유사한 집단의 평균 임금 인정, 개인차를 고려한 소득기준 상향 적용 가능	인구 센서스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무직자	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금기준 설정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인정
가동연령	65세를 종료 시점으로 봄. 건강, 교육수준, 직업 등 개인적 차이를 고려한 상향 조정 가능	18~67세를 가동연령을 봄	남자 22~60세, 여자 20~60세로 차등 적용
공제이자	실제 시장 이자율을 고려한 복리 이용 가능. 주에 따라 0% 이율 적용. 인플레이션 및 임금인상 추세 적용 가능	5% 복리 적용. 시장 이율 적용 사례 있음	법정이율 5% 이용, 경우에 따라 복리·단리 허용
생활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은 불법행위 사망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에게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50% 공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35% 공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의 1/3을 생활비로 공제
위자료	재산적 손해를 넘어서는 위자료 인정. 주별로 20~50만 달러로 비재산 손해의 상한을 정한 경우도 있음. 다양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유족의 가족에게 거액의 위자료 제공	병원 통원 및 입원 기간,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 위자료 가족 위자료 등을 따로 지급. 한국에 비하여 위자료 수준이 높음	8천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노동능력 상실에 따라 지급

IV.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피보험이익은 보험수요를 억제하므로 한국의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안전사고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장은 이렇게 낮은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각 개선방안의 도입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다른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본 절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강화와 이로 인한 자전거 사고 감소를 예로 들어 배상책임의 강화가 안전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표 IV-1〉은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최근 손해배상 판례이다. 〈표 IV-1〉의 내용 중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고베법

원 2013.7.4 판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22일 일본 고베시 주택가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15세 소년은 62세 여성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소년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억 590만 엔(원화로 10억 원 이상)을 청구하였고 고베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여 2013년 소년의 가해자 측에 9,500만 엔(약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표 IV-1〉 일본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액 판례

판결일	배상액 (만 엔)	관할 법원	사고내용
2013.7.4	9,521	고베	11세 남학생이 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중 62세 여성과 정면충돌, 피해자는 의식불명상태가 됨
2008.6.5	9,226	동경	남자 고등학생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인도에서 24세 남성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언어 능력 상실 발생시킴
2003.9.30	6,779	동경	남자가 페트병을 손에 들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38세 여성과 충돌. 피해자는 뇌좌상으로 사고 3일 후 사망
2007.4.11	5,438	동경	남자가 신호표시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에 있던 55세 여성과 충돌. 여성은 사고 11일 후 사망
2005.9.14	4,043	동경	남자 고등학생이 교차로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62세 선반공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인 62세 남성은 사고 13일 후 사망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http://www.sonpo.or.jp/archive/publish/sonpo/pdf/0003/no_2014/fact2014_03.pdf).

〈표 IV-2〉 일본 자전거 사고 사례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

내역	금액(만 엔)
개호비(간호비)	3,940
일실이익	2,190
위자료	2,800
합계	8,930

자료: 산케이 신문

(http://sankei.jp.msn.com/west/west_affairs/news/130713/waf13071312010019-n1.htm).

〈표 IV-2〉는 위 자전거 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이다. 일본 법원은 〈표 IV-2〉의 배상책임액에 치료비와 기타 비용을 더해 총 9,50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내역은 높은 의료비 수준과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고액 손해배상 판결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① 자전거 사고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② 자전거 보험 판매가 급증하였다.⁸⁹⁾

〈표 IV-3〉은 2008년 이후 일본의 연도별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다. 〈표 IV-2〉에 따르면 일본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인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자신들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표 IV-3〉 2008년 이후 일본 자전거 사고 건수

구분	자전거 사고 대상						합계	변화량
	자동차	이륜차	보행자	자전거		기타		
				상호	단독			
2008	134,308	10,639	2,959	4,348	5,015	5,393	162,662	-4.97%
2009	130,754	9,975	2,946	3,919	4,371	4,520	156,485	-3.80%
2010	127,422	9,498	2,770	3,799	3,747	4,445	151,681	-3.07%
2011	121,007	9,134	2,806	3,616	3,178	4,317	144,058	-5.03%
2012	111,414	7,854	2,625	3,260	2,816	4,079	132,048	-8.34%
2013	102,118	7,023	2,605	3,037	2,499	3,758	121,040	-8.34%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archive/publish/traffic/0002.html>).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⁹⁰⁾

89) 일본손해보험협회는 자전거보험 통계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 자전거 보험의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matome.naver.jp/odai/2137390229272425401> 참조.

90) 효고현(兵庫県)은 자전거보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

<http://www3.nhk.or.jp/news/html/20141021/k10015556251000.html> 참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일본과 같이 높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2013.7.4 고배법원 판례에 한국 손해배상 실무를 적용해 보면 먼저 한국 법원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일실탁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실탁익이 0이 된다. 또한 일본이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제공한데 비해 한국 손해배상 실무는 8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에 개호비, 치료비, 병원비 등을 실비로 계산한 정도가 되므로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다.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Ⅲ장의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 비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다수 가지고 있다.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IV-4〉 한국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

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함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④ 가동연령에서의 남녀 차별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⑥ 아동 피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 및 추가 교육비용을 손해로 불인정

〈표 IV-5〉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 비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성별·학력별 평균임금 인정	지역별 평균소득을 인정, 단, 농촌은 수입으로 도시는 가처분소득으로 함	일용노임

자료: 법원행정처(2007. 2),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⁹¹⁾; 동경변호사회변호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 ISBN: 4324094667; ぎょうせい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 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 ISBN: 4324088055; ぎょうせい(<http://www.chinalawedu.com>).

〈표 IV-5〉는 여러 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소득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표 IV-5〉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사한 집단의 소득(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피해자의 개인차를 소득기준을 정하는데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다. 일용노임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66.11.12. 66다1504〉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참고조문: 민법 제750조

위의 판례는 1960년대 인구센서스 등에 성별·연령별 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건강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한 대법원 판례

91) <http://www.koutuujikobengo.jp> 참조.

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 판례를 근거로 아동·주부·학생·무직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IV-6〉 일용노임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임금 비교

(단위: 월 급여, 원)

구분	남자	여자
일용노임 기준	2,057,154 ¹⁾	1,362,130 ²⁾
평균임금 기준	2,878,121 ³⁾	1,958,161 ⁴⁾

자료: 일용노임은 장종운(2014), pp. 85,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은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참조. 1) $93,507 \times 22$, 2) $61,915 \times 22$, 3)과 4)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표 IV-5〉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대인사고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 기준을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6〉은 한국의 일용노임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민법 제379조에 정해진 법정이율 5%를 손해배상액의 중간이자 공제액을 산출하는데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⁹²⁾

92) 2014년 현재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 수준임. 다시 말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약 3% 정도임. 1년 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고려하여 100만 원에서 3% 연 이자를 공제하여 현재 시점에서 97만 원($100만\ 원 / 1.03 = 970,87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100만 원에서 5% 이자를 공제하여 95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피해자는 연 5%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실제로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대신 98만 원($952,380 \times 1.03 = 980,952원$)을 받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므로 5% 이율을 이용하여 피해액의 현가를 구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피해액이 크고 사고로 인하여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된 기간이 길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실제 사회에서의 가동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낮은 수준의 가동연령 종료 시점이다. 미국은 통상 65세를 가동연령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67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 60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인구가 31% 이상인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V-7〉 참조).

〈표 IV-7〉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명, %)

연령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응답자 합계	일한사람 비율
15~19세	189,260	3,154,527	3,343,787	5.66
20~24세	986,404	1,649,370	2,635,774	37.42
25~29세	2,409,142	1,107,834	3,516,976	68.50
30~34세	2,634,573	1,065,461	3,700,034	71.20
35~39세	2,951,079	1,154,120	4,105,199	71.89
40~44세	3,116,484	1,018,045	4,134,529	75.38
45~49세	3,067,048	1,008,126	4,075,174	75.26
50~54세	2,695,681	1,103,818	3,799,499	70.95
55~59세	1,734,758	1,034,679	2,769,437	62.64
60~64세	1,062,279	1,122,068	2,184,347	48.63
65~69세	656,883	1,156,078	1,812,961	36.23
70세 이상	696,807	2,917,008	3,613,815	19.28
합계	22,200,398	17,491,134	39,691,532	55.93

자료: 통계청 인구 총 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C1002&conn_path=I3) 참조.

한국 가동연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남녀 간의 차별이다.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 실무는 군복무를 이유로 남자의 가동연령 개시 연령을 여자보다 2년 늦은 22세로 하고 있다. 박창수(2009)는 이러한 관행이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⁹³⁾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헌법 제25조)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다.⁹⁴⁾ 박창수(2009)는 만일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위배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군복무로 인하여 2년을 남자의 가동연령에서 제하는 것 또한 헌법 제25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⁵⁾ 따라서 현재 군복무를 이유로 남자의 가동연령에서 2년을 제하는 것 또한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의 위자료 수준이 낮고 산출 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통원·입원 기간, 장애등급정도,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의 가정에서의 지위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대 3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위자료의 상한선을 8천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 사망 시 4~5천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위자료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가족의 구성원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여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경우 이를 장기간 감내하고 개호해야 하는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박창수(2009)는 아동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특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한국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교육 기회 상실이나 특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이 가동연령 개시 시점(남: 22세, 여: 20세)이 되기 전까지의 일실회익을 손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아동의 노동능력 상실

93)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됨.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94) 현재 1999.12.23, 98헌마363.

95) 박창수(200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법대 교수 9명 중 8명이 군복무를 이유로 남성의 가동연령에서 2년을 감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답하였음.

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⁶⁾

본 절의 연구결과와 같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불합리하고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대인사고 배상책임 기준은 경제주체들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낮추어 경제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동기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는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2차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본 절은 전 절에서 언급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가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제공한다.

먼저 우리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합리화가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17세 남녀 고등학생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여 기존의 기준과 강화된 기준의 대인사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표 IV-8>에서 비교하였다.

96) 박창수(2009), pp.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3387호 사건: 「2002. 7. 22. 주택가 골목 길에서 당시 남자 6세인 원고가 트럭에 치여서 뇌좌상을 입고 개두술을 받고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사고 이후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 200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정신과적으로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항목 IX-B-3항의 58% 영구장해, 치과 약 3%의 영구장해, 성형외과 약 5%의 영구장해가 나왔고, 합산해서 복합 60%의 영구장해가 나왔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고 당시인 6세부터 성년인 20세가 될 때까지의 손해로서 장애로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겪게 될 피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입증도 곤란하고 법원에서 받아 준 전례도 찾지 못했다면서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일실수입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위자료도 통상적인 경우에 준해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임.

〈표 IV-8〉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에 따른 손해배상액 변화 예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기존의 산출 방법 적용 ¹⁾	354,064,321	267,785,464
-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배상액 ²⁾	
평균임금 소득기준 적용 ³⁾	+123,341,086	+97,484,853
연 3% 이율 공제 ⁴⁾	+75,627,523	+51,377,464
가동연령 18~65세 적용 ⁵⁾	+82,026,984	+36,172,883
위자료 2배 적용 ⁶⁾	+40,000,000	+40,000,000
추가 배상액 합계	+320,995,593	+225,035,200

주: 1) 기존의 산출 방법은 17세 남녀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금을 계산한 것임. 사망 배상금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남자(22~60세)와 여자(20~60세)의 일실회의 현가에 사망 위자료 4천만 원과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한 것임. 일실회의 현가는 법정이율 5%를 호프만법(단리)에 적용하여 구하였음.

2) 기준강화에 따른 추가 배상액은 각 기준의 변화에 따른 배상액의 증가분임.

3) 일용노임 대신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임금을 적용한 경우 증가하는 배상액임.

4) 5% 대신 3%를 공제이율로 이용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임.

5) 남녀의 가동연령을 18~65세로 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임.

6) 사망 위자료 4천만 원이 2배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은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본 표는 피해자 사망 시 지급되는 일반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다소 달라질 수 있음.

〈표 IV-8〉은 대인사고 산정 기준이 강화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7세 학생의 일실회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 대신 일본과 같이 성별에 따른 전 연령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남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억 2천3백만 원 증가하고 여학생의 손해배상액은 9천7백만 원 증가한다. 연 5% 이율 대신 3% 이율을 적용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7천5백만 원과 5천백만 원 증가한다. 가동연령을 현행 남자(22세~60세), 여자(20세~60세)로 하던 것을 18세~65세로 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8천2백만 원과 3천6백만 원 증가한다. 현행 4천만 원 수준의 사망 위자료를 2배로 증가시키면 17세 학생들의 가족은 각각 4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표 IV-8〉이 포함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기준이 모두 강화될 경우 17세 남녀학생에 대한 사망 배상금은 각각 90%와 84% 증가한다.

본고는 〈표 IV-8〉과 같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대인사고 손해

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 보험 사고의 대인사고 통계가 교통사고 대인사고 피해자 통계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⁹⁷⁾ <표 IV-9>는 2013년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이다.

<표 IV-9>에 따르면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 3,651명, 여자 1,483명이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남자 204,505명, 여자 124,206명이었다. 경찰청 2014[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 328,771명 중 경상이 215,787명(65.65%), 중상이 95,361명(29.01%), 그리고 부상을 신고만 한 경우가 17,563명(5.35%)이었다.

<표 IV-9> 2013년 연령별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

(단위: 명)

구분 연령	사망자		부상자	
	남	여	남	여
0~6	25	19	3,288	2,739
7~12	25	13	5,040	3,370
13~20	177	46	17,377	8,578
21~25	197	45	14,893	9,364
26~30	202	34	19,097	11,067
31~35	221	26	20,535	11,130
36~40	203	44	18,554	10,620
41~45	244	58	20,414	12,400
46~50	322	86	20,243	12,537
51~55	375	122	21,831	13,700
56~60	339	120	16,310	9,689
61~64	229	87	8,571	5,186
65~70	367	184	8,859	5,830
71+	725	554	9,493	7,996
합계	3,651	1,483	204,505	124,206

주: 성별이 '불명'인 경우는 '여성'의 소득기준이 낮으므로 보수적인 통계량 산출을 위하여 '여성'으로 분류하였음. 성별이 불명인 경우는 사망 5,092건의 사망 사고 중 7건임.

자료: 경찰청2014[2013년] 교통사고 통계.

97)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교통사고 사고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뿐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아님.

〈표 IV-10〉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성별/사고유형				합계	α 98)	시장변화
		남자		여자				
적용기준		사망	중상	사망	중상			
기준 ¹⁾	배상액	8,128	1,265	1,766	283	11,442	1	0%
	기준대비	100%	100%	100%	100%	100%		
평균임금 기준 ²⁾	배상액	8,416	1,308	1,792	287	11,803	1.02	+3%
	기준대비	104%	103%	101%	101%	103%		
3%공제 이율 ³⁾	배상액	9,049	1,403	1,924	307	12,683	1.05	+10%
	기준대비	111%	111%	109%	108%	111%		
가동연령 18~65세 ⁴⁾	배상액	9,631	1,490	2,046	325	13,492	1.09	+17%
	기준대비	118%	118%	116%	115%	118%		
위자료 2배 ⁵⁾	배상액	9,588	1,557	2,341	398	13,884	1.11	+20%
	기준대비	118%	123%	133%	141%	121%		
모든기준 강화 ⁶⁾	배상액	12,735	2,029	2,873	478	18,115	1.29	+55%
	기준대비	157%	160%	163%	169%	158%		

주: 각 배상액은 〈표 IV-9〉를 기준으로 남녀별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의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임. 손해배상액을 보수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표 IV-9〉에서 각 집단의 대표 연령을 가장 높은 값으로 함. 예를 들어 첫 번째 집단의 피해자들의 연령을 6세로 가정함. 71세 이상 피해자 집단의 대표값은 75세로 함. 손해배상 실무에 따라 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4천만 원, 상해사고의 최대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함. 남녀 가동연령은 남자(22~60세) 여자(20~60세)로 함. 피해자 연령이 가동연령 이하인 경우는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가동연령 기간 중에는 전연령 평균임금, 60세를 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할인율은 법정이자율이 5%를 이용함.

1) 강화된 기준 미적용.

2)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기준을 남녀별 전연령 평균임금으로 함.

3) 공제이자율을 3%로 함.

4) 남녀의 가동연령을 18~65세로 함

5) 위자료를 1)의 배 수준으로 함

6) 2)-5)의 모든 기준을 강화함. 〈그림 III-4〉에 따라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50% 정도이므로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에 따라 증가하는 손해배상액 증가율의 50%를 전체 손해배상책임의 증가 폭으로 함. 예를 들어 가동연령을 18세-65세로 하는 것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의 18% 증가시키고 가동연령 변화가 전체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9%임. 손해배상책임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는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수요곡선(〈그림 III-2〉 참조)을 이용하여 추정함.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지는 보상한도는 고려하지 않음. 대인사고 배상에서 치료비, 간병비, 의족·의수 구매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가동연령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만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주부 및 무직자 비율은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않음.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본 실험은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음.

98) 기준대비 손해배상액 비율을 w 라 할 때 $\alpha = (w - 1)/2 + 1$ 이 이용되었음. 이러한 수식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대물사고의 50%를 차지하고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것임(〈그림 III-4〉 참조).

‘신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신고 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파악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큰 대인사고 손해배상 비용이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상’의 경우 215,787명으로 총 교통사고 피해자의 65.65%를 차지하나 각 건당 평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총 피해액이 수백억 원 수준이므로 중상이나 사망 사고에 비해 총 손해액이 크지 않다. ‘중상’과 ‘사망’ 사고의 손해액이 타 사고 유형에 비해 지출 비용이 크므로 ‘사망’ 사고와 ‘중상’ 사고만을 고려하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비용을 구하고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의 강화가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10>의 실험에서 ‘중상’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⁹⁹⁾

<표 IV-10>의 결과는 경제 모델의 특성상 다소간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나 수집 가능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경제모델을 토대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 것이다.

<표 IV-10>은 4가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가 손해배상책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IV-10>의 실험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는 비경제활동 인구 소득기준 상향(+3% 배상책임보험 수요), 공제 이자율 현실화(+10% 배상책임보험 수요), 가동연령 확대(+17% 배상책임보험 수요), 위자료 수준 강화(+20% 배상책임보험 수요)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연령 및 상해 정도에서 같은 패턴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본 실험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상향은 ‘사망’ 및 ‘중상’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기존의 1조 1억 원에서 최대 1조 8천억 원까지 상향시키고 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도 최대 5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표 IV-10>의 실험에서 ‘중상’ 사고 피해자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11>는 ‘중상’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50%

99) 노동능력상실률을 10~50%로 가정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표 IV-10>에서 설명함.

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든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표 IV-11〉 노동능력 상실률 변화에 따른 시장 규모 변화

노동능력 상실률	손해배상액(억 원)			α	X^*	시장 변화
	기존방법	모든 기준 강화	변화량			
10%	11,442	18,115	58%	1.2916	0.6305	+55.79%
20%	12,990	20,621	59%	1.2937	0.6311	+56.19%
30%	14,537	23,128	59%	1.2955	0.6316	+56.53%
40%	16,085	25,634	59%	1.2968	0.6319	+56.79%
50%	17,632	28,140	60%	1.2980	0.6323	+57.01%

〈표 IV-11〉에 따르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에서 50%로 증가할 때 기존 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11,442억 원에서 17,632억 원으로 54% 증가하고 모든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한 손해배상액은 18,115억 원에서 28,140억 원으로 55% 증가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이 각각 10%, 20%, 30%, 40%, 50%인 경우 모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존 방법의 손해배상액을 58~60% 증가시켜 손해배상액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상승이 기존방법과 기준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 IV-10〉의 실험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50%가 아닌 다른 유사한 수치로 할지라도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가 배상책임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결어

대부분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 사고는 한국의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고에 의한 손해를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로 나누었을 때 대물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국가별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큰 차이가 없으나 대인사고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 연구는 안전사고의 방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상책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가 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리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본고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이로 인한 대인사고 손해배상관련 제도 개선은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수익의 일부를 관련 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투자하여 왔고 그 결과 국내에서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는 과거해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은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들이 관련 보험사고의 방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변화가 그렇듯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손해배상책임을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안전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나아가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90년대에 불법행위법 개혁(Tort Reform)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

러한 변화는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대인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공제조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로 요율을 높이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¹⁰⁰⁾과 조합원들에게 낮은 요율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제조합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재해보험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요율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보험, 높은 손해율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조합 보험,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재보험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이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경제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100) 자동차보험의 2003~2012년 10년간 합산비율((지급보험금+사업비)/보험료) 평균은 105.69%로서 투자 수익을 고려하여도 국내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임.

참고문헌

- 강구철(2009), 『영·미의 국가배상제도』,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pp. 51~96.
- 고충곤(2009), 『미국 특허침해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30, pp. 1975~6348.
- 권용우(1998), 『불법행위론』, 신양사, ISBN: 9788985609173.
- 김광국(201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 손해)』, 보험연수원.
- 김경환·강민규·이해랑(2014),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김덕태(1998), 『위자료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동겸(2013),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김두진(2007),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김선정(2000. 12), 『임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의 법적 과제』,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pp. 3~38.
- 김영욱·차일권(1998),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 연구조사자료, 보험개발원.
- 김영희(2014), 『미국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민사법학, 66, pp. 185~238.
- 김학수(1988),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5, pp. 1~22.
- 김현수·윤용석·권순현·장다혜(2012),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2-12-㉔,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수(2012), 『미국법상 징벌적손해배상』, 재산법연구, 29(2), pp. 325~ 355.
- 박옥자(2009. 6), 『무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박은경(2012. 2),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 손해배상책임 위험의 전가』, 법학연구, 제45집.
- 박창수(2009), 『아동의 일일이익 배상과 가동기간의 실무 쟁점』, 저스티스, 제110호.
- 법원행정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 보험개발원(2006),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CEO Report.
- _____ (2012),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CEO Report.
- 보험연수원(2014a), 『보험법』, 금융인쇄공사.
- 보험연수원(2014b), 『배상책임보험』, 금융인쇄공사.
- 사법연수원(2013), 『손해배상소송』, 성문인쇄사.
- 엄창희(1999),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Ⅲ)-임원배상책임보험』, 연구조사자료, 보험개발원.
- 오영수·김경환·박정희(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 윤용석(2013), 『징벌적손해배상제 책임론』,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경재(1997), 『배상책임보험에서 고의·중과실 면책시 피해자구제문제』, 보험법률 통권14호, 보험신보사.
- 이기형·김란·조혜원(1996),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연구조사자료, 보험개발원.
- 이기형·조재현(2003),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상과 시사점』, Insurance Business Report, 보험개발원.
- 이기형(2008),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연구자료, 보험연구원.
- 이기형·안철경·기승도·권오경(2010),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기형·이승준·최창희·권오경·정인영(2014),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
- 이덕환(2001), 『美國 不法行爲法上の 非財産的 損害賠償』, 비교사법, 8(2), pp. 961~1006.
- 위계찬(2013), 『제조물책임에서 순수재산손해의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2집, pp. 275~306.
- 장재옥(1994), 『미국의 거액 손해배상판결의 승인과 집행』, 비교사법, 1(1), pp. 311~345.

- 장중운(2014), 『최신 손해배상실무』, ISBN: 9788963463544, 진원사.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2012),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 조혜원(2005), 『국제 비교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 조망 및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 보험개발원.
- 지수현(1996), 『배상책임보험론』, 보현연수원.
- 차일권 · 오승철(2006),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자료, 보험개발원.
- 한경환(2010),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논문.
- 한국화재보험협회(2013), 『언더라이터와 서베이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이해』.
- 동경변호사회변호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 ISBN: 4324094667, きょうせい.
-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 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 ISBN: 4324088055, きょうせい.
- Henry Markowitz(1952), 『Portfolio Selection』, *The Journal of Finance*, 7(1), pp. 77~91.
- John C. Bonnie(2008), “Agreement to indemnify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 fifty state survey”, Weinberg Wheeler Hudgins Gunn & Dial.
- Lisa Bingham, Tina Nabatchi, Jeffrey Senger, Michael Jackman(2009), “Dispute resolution and vanishing trial: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litigation and ADR outcomes”,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4(2).
- Richard Banks(2007), “Insurance day: International Comparative Review of Liability Insurance Law”, Barlow Lyde & Gilbert.

부 록

1.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

〈배상책임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1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23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23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6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0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최 창 희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 박사
The University of Iowa 보험계리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cchoi@kiri.or.kr)

정 인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essence4u@kiri.or.kr)

조사보고서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20-6 94320

979-11-85691-02-2 (세트)

정가 10,000원